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정당화와 교육적 과제 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이승철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정당화와 교육적 과제 연구

지도교수 박 찬 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이 승 철

이승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김 병 환 (인)

부 위 원 장 박 찬 구 (인)

위 원 정 창 우 (인)

【국 문 초 록】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정당화와 교육적 과제 연구

이 승 철

군(軍)의 역할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집단과 차별되는 군만의 고유한 기능은 ‘전쟁 수행’ 혹은 ‘무력의 관리’이다. 이러한 군의 특성과 윤리(倫理)는 근본적인 모순(矛盾)관계에 있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전쟁’ 혹은 ‘무력’은 내면에 폭력적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뜻하는 윤리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戰時), 비전투원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나 무분별하게 무력이 사용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음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즉, ‘군대윤리’라는 개념이 모순된 개념이 아님은 군대윤리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역직관성(逆直觀性)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군대윤리 개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군대윤리 개념에 대한 정당화(正當化)의 문제가 남는다. 다시 말해, 군대윤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며, 그 이론에 따른 의의와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대윤리’를 중심 주제로 하여, 이를 윤리학의 주요 이론인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로 정당화한 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의 이론’과 ‘군대윤리적 관점에서의 명령과 복종’이라는 논쟁점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군대윤리의 교육적 과제로 ‘의무론을 중심으로 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교육의 필요성’과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군대윤리를 구

성하는 세 영역의 확인이다. 연구자는 군대윤리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정의가 군인 혹은 군대의 특정한 기능에만 집중하거나 지나치게 모호하게 설정된 한계를 지적하고, 군대윤리에 대한 포괄적 영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대윤리는 '군대'라는 집단 혹은 집단의 행위에 관한 윤리인 '①전쟁윤리'와 집단 안의 개인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②군인의 공적 도덕성'과 '③군인의 사적 도덕성'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이론을 확인하였다. 즉,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적 가치가 만연한 현대 사회 속에서 군대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군대윤리에 적용된 제 이론들의 적용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검토 결과, 현대 군에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은 의무론을 중심으로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장점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선한 동기,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모든 인간을 보편적이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특징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인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필수적인 윤리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군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도덕성은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덕윤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공리주의는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율의 제정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군대윤리적 관점에서의 정당한 명령과 복종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명령과 복종 행위는 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행위이자 기능으로, 이는 '전쟁'이라는 군인의 특수한 임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명령과 복종 행위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옳지 않으며, 법적·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명령이 정당한 명령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군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 위에 연구자는 '군인의 책임윤리'가 더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군인의 책임윤리는 법적·도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민간인 등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행한 뒤, 작전에 책임질 수 있는 명령권자(수명자)의 자세

를 말한다. 또한 군대윤리적 명령과 복종의 행위를 의사결정 모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군인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대윤리 교육에 있어서 덕윤리의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논의의 대상을 대한민국 육·해·공군 사관학교로 한정하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람을 활용하였다. 검토 결과 현재 3군 사관학교의 교육은 다분히 의무·규칙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 반해, 사관학교의 학칙에 제시된 임무나 사관학교의 규모적인 측면을 통해 덕윤리 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덕윤리를 적용한 사관학교 교육의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였는데, 시사점으로는 상황·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사관생도·장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 유덕한 품성을 통해 외적 통제 없이도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도덕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관학교와 군에서 덕윤리적 교육은 기존의 규칙·의무 중심의 윤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성격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군대윤리의 세 영역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 실증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 구체적인 교육 모형을 제시하지는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군대윤리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군대윤리에 대한 더욱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군대윤리, 군대윤리 교육,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명령과 복종, 의사결정 모델

학 번 : 2010-21499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6

II. 군대윤리의 이론적 배경 ---- 9

1. 군대윤리의 개념 ---- 9
   1) 군대윤리의 등장배경 ---- 9
   2) 군대윤리의 의미와 범위 ---- 12
2. 군 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 ---- 18
   1) 직업주의와 군대 ---- 18
   2)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군인과 군대윤리 ---- 21

III.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정당화 ---- 25

1. 공리주의적 접근 ---- 25
   1) 공리주의의 개념 ---- 25
   2)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방법 ---- 28
   3)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방법의 의의와 한계 ---- 32
2. 의무론적 접근 ---- 36
   1) 의무론의 개념 ---- 36
   2)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방법 ---- 39
   3)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방법의 의의와 한계 ---- 44
3. 덕윤리적 접근 ---- 50
   1) 덕윤리의 개념 ---- 50
   2)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방법 ---- 53
   3)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방법의 의의와 한계 ---- 55

IV. 현대 군대윤리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윤리학적 검토 -- 58
1.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 이론 검토 ---------- 58
1) 현대 사회의 가치와 군의 특수성 ---------- 58
2)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적 이론의 타당성 검토 ---------- 61
2.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의와 한계 ---------- 66
1) 군에서의 명령과 복종의 의미 ---------- 66
2)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 ---------- 70
3) 군대윤리적 관점에서의 복종과 그 의의 ---------- 74

V. 군대윤리의 교육적 과제 ---------- 77
1.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형성의 필요성 ---------- 77
1)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 ---------- 78
2)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 80
2.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의 필요성 ---------- 84
1)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의 필요성 ---------- 85
2)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의 적용 가능성 ---------- 88
3) 덕윤리적 교육의 시사점과 한계점 ---------- 90

VI. 결론 ---------- 96

참고문헌 ---------- 101

ABSTRACT ---------- 106

표 목 차

<표-1> 학술정보 검색엔진 “군대윤리” 검색 결과 ---------- 3

<표-2> 전쟁윤리의 윤리적 원칙 ---------- 14

<표-3> 의무의 윤리와 덕의 윤리 비교 ---------- 51

<표-4>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 이론별 적용 가능성 ---------- 61

<표-5>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 ---------- 79

<표-6>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 81

<표-7>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육목표 및 교훈 ---------- 86

<표-8> 육・해・공군사관학교 학칙 제 2조(임무) ---------- 88

<표-9> 육・해・공군사관학교 학년별 훈육 중점(생활목표) ---------- 91

I. 서론

1. 연구목적

군(軍)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물론, 현대에는 전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군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후자도 '전쟁을 위함'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있는 데는 차이가 없다. 군이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이 자명한 것처럼, 전쟁이 그 자체로 '폭력성'과 '잔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위임도 자명하다. 아무리 고도의 정밀타격 무기가 발달되고 불필요한 살상을 억제하는 규범과 협약이 맺어지더라도 한 번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명과 건물, 지역 등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강요하는 폭력행동이다."[1]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군과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간 군에서 윤리는 주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군에서의 최고의 목표가 어떻게 적을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제압할 것인가[2]에 맞춰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논하는 윤리(倫理)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전쟁이라는 상황과 윤리는 근본적인 모순(矛盾)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대에서의 윤리적 논의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며, 불가능을 넘어 오히려 금기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전쟁과 관련된 몇몇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옳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만약 앞에서와 같이 군과 전쟁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유태인 학살이나 일

1) Karl von Clausewitz, 류제승 역, 『전쟁론』(서울: 책세상, 2002), p.33.
2) 물론, 여기서 제압이라 함은 물리적 제압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본군의 생체 실험, 또는 베트남전에서의 양민 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일체의 가치판단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그릇되었음을 우리는 인식한다.

윤리(倫理), 혹은 도덕(道德)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또는 그 도리를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능력'[3]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의 정의를 군에서의 윤리적 논의, 즉 군대윤리에 적용해 본다면 그 의미는 '군대 내에서, 또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그 도리를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처럼 '군인으로서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군대윤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 특수성과 중요성은 군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내부적 측면은 군인으로서의 도리에 반하는 개인의 욕구의 크기와 범위가 사회 일반적인 욕구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거슬러 윤리적 행동을 한다면, 이에 따르는 손실(혹은 기회비용)은 기껏해야 경제적 손실이나 심리적 손실에 지나지 않는 반면 군대의 경우, 특히 전쟁 상황의 경우에 나의 욕구에 반하는 윤리적 행동의 기회비용은 최악의 경우 생명을 담보로 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행위는 내가 더 받은 금액만큼의 경제적 가치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는데..'하는 아쉬움을 포기함으로써 실천 가능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적군이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마을의 주민을 살려두는 것은 나와 나의 부대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認知)와 이에 대한 감내(堪耐)를 통해서만 실천 가능하다.

다음으로, 외부적 측면은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는 권한과 능력에 관련한 부분이다. 즉, 일찍이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군직의 본질을 "무력의 관리"[4]라고 정의내린 것이나, 니코 케이저(Nico Keijzer)가

3) 박찬구,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파주: 서광사, 2006), p.17 참고.
4)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군인과 국가-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12-16 참고.

군대의 1차적 특징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사활(死活)이 걸린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조직화된 폭력을 사용하는 것”[5]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군은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타인에 대한 폭력과 공격,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해치는 행위까지도 용인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장려되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권력을 자칫 개인적인 안위 등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 사회활동의 윤리적 행동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 앞선 편의점과 전쟁의 예를 되짚어 보면,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준 편의점 주인은 차후에 자신이 거스름돈을 더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작은 경제적 손실과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하지만 전쟁 상황의 경우 나의 부대의 안전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곧 상대국의 모든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처럼 군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가능하며,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은 군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2013년 9월 11일 현재 국내 주요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RISS, KISS, DBpia에서 “군대윤리” 키워드를 제목으로 포함하는 학술자료는 학술논문 3편, 학위논문 2편, 논평 1편, 서평 1편 밖에 없으며, 단행본은 개정판을 제외할 경우 11권이 전부이다. 아래는 학술논문, 서평, 단행본에 대한 검색 결과이다.

<표-1> 학술정보 검색엔진 “군대윤리” 검색 결과[6]

구분	종류	저자	제 목	발간지 (출판사)	출판 년도
1	학술 논문	윤영돈	군대윤리의 관점에서 본 정신전력 제고 방안	국방연구	2012

5) Nico Keijzer, 조승옥・민경길 편역, 『군대명령과 복종』(서울: 법문사, 1994), p.21.
6) 본 검색결과는 각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상세검색 항목 중, 제목을 ‘군대윤리’로 검색한 결과임. 검색엔진에 중복되는 자료와 저자・제목이 일치하는 저서는 동일 단행본으로 보았음

2	학술 논문	장용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군대윤리	한국군사학논집	2001
3		조승옥	"군대윤리 : 문민통제, 복종, 개인의 가치"	한국군사학논집	1984
4	학위 논문	임춘택	군대윤리 교육체계에 대한 연구 : 신세대 사병을 중심으로(석사)	영남대학교	1997
5		김철희	군정신교육 향상 방안 : 군대윤리를 중심으로(석사)	경북대학교	1993
6	논평	윤영돈	“실천윤리 연구동향: 군대윤리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국윤리 교육학회	2007
7	서평	임원빈	군대윤리의 객관적 논의의 지평 마련	철학과현실	1999
8	저서	조승옥 외	군대윤리	진영사	2010
9		이광보 외	군대윤리	집문당	2009
10		이재평 외	(실천하고 행동하는) 군대윤리	글로벌	2009
11		김진만 박균열	군대와 윤리	양서각	2010
12		김용현 외	군대윤리	백산출판사	2011
13		박균열 외	국가안보와 군대윤리	한국학술정보	2008
14		이민수	열린군대와 리더윤리	철학과현실	2006
15		매슈즈 외	군대윤리	국방대학원	1993
16		백종천 이창훈	군대의 윤리	탐구당	1989
17		한무협	군인과 책임:군대윤리	진명문화사	1975
18		김성경	한·미 육군의 군종제도:종교적 이념과 군대윤리의 조화와 상충에 관한 비교 연구	화랑대 연구소	1990

물론, “군대윤리”라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포함하지 않는 학술자료도 있을 수 있고, 군내 학술지 등 검색엔진에 검색되지 않는 학술자료 등이 추가로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대윤리가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어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학술정보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가능성이라 가정한다면, 앞서 제시한 검색 결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학술논문의 경우 3편이라는 연구물의 분량도 문제이지만, 윤영돈

의 연구물을 제외한 두 연구물은 원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7]로 실질적으로 인용 가능한 학술논문은 단 한편에 불과한 상태이다.

한편, 군대윤리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 낸 미국에서는 군대윤리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지인 “The Journal of Military Ethics”가 2002년에 발간된 뒤 단독 학회지에서만 통산 12권, 41호, 321편의 군대윤리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8] 또한 다종 학술지의 논문 검색엔진인 MetaLib[9]을 이용하여 학술논문 검색 결과 제목(title)에 ‘military ethics′를 포함하는 논문이 338편, 주제(subject)에 해당하는 논문 115편, 일반검색(general)으로 검색된 논문은 무려 11,996편에 이르렀다. 물론, 단순히 학술논문의 수적 차이로 학문적 깊이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곧 군의 윤리적 성숙도의 차이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활발한 학문적 연구가 군의 윤리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의 군대와 윤리학 분야에는 다소 생소한 군대윤리를 다루고자 한다. 군대윤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군대윤리의 개념과 이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이를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라는 현대의 주요 윤리 이론을 통해 검토하고, 이어서 군대윤리의 주요 논쟁점과 교육적 함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아래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군대윤리는 어떠한 윤리학적 이론으로 정당화 가능한가?

나. 군대윤리는 현대 군의 주요 논쟁점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다. 군대윤리의 교육적 과제는 무엇인가?

---

7) 장용선, 조승옥의 논문의 경우 검색엔진을 통한 원문보기는 물론, 해당 학회지(한국 군사학논집, http://hwarang.kma.ac.kr/sub5/sub_03.html)의 논문 목록에서도 검색이 불가하였다.

8) The Journal of Military Ethics(http://www.tandfonline.com/loi/smil20)는 2002년 연 2회, 2003-2005년 연 3회 발간된 뒤,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4회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2013년도 2호까지 발간된 상태이다.

9) 검색일자 2013년 9월 11일 현재 기준이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4.5.0(764) 버전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교육연구를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학자마다 연구를 분류하는 방법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이 연구는 '군대윤리'라는 주제에 대한 윤리학적 정당화와 이를 통한 교육적 과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이론을 규명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초 연구(basic research, fundamental research)[10] 또는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나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구문제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고, 연구주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얻고자 확인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11]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실험이나 조사, 관찰과 같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보다는 "연구주제에 대한 책, 논문 등 인쇄된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여 종합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12]를 실시한다. 또한 5장 "군대윤리 교육의 과제"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의사결정 모델이나 사관학교 교육 모습을 바탕으로 군대윤리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문헌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한다. 문헌 분석 방법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시된 의사전달의 기록물에 대한 내용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그 동기, 원인, 결과나 영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리하려는 방법[13]이며, 연구자가 탐구해 보고 싶은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방법을 말한다.[14]

이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 2장은 군대윤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1절 군대윤리의 개념에서는 전근대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군대윤리라는 개념이 어떠한 배경과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군대윤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군대윤

10) 성태제・시기자, 『연구방법론』(서울: 학지사, 2006), pp.38-39.
11) 이군희,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서울: 법문사, 2001), p.14.
12) 위의 책, p.16.
13)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서울: 비앤엠북스, 2008), p.301.
14) 김경동 외, 『사회조사연구방법』(서울: 박영사, 1997), p.308.

리의 의미는 기존의 정의(定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군대윤리가 포함하는 범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정의가 지나치게 한정되거나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군대윤리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재정의(再定義)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응용윤리의 한 분야인 직업윤리로서 군대윤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군 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 개념을 살펴본다. 1항을 통해 시대에 따라 군대가 어떠한 발전과정을 통해 현대의 직업군대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며, 2항에서는 헌팅턴이 주장한 전문직업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러한 전문직업의 요소에 군대와 군인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3장은 군대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윤리학적 정당화를 시도한다. 정당화를 위한 윤리학적 이론은 응용 윤리의 영역에 적용할 만한 대표적 이론으로 여겨지는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15]를 사용한다. 먼저, 공리주의적 접근은 군대윤리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철학적 배경으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군의 통제된 폭력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리주의와 현대의 규칙 공리주의의 특징을 살펴본 뒤, 이의 군대윤리에 적용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의무론적 접근은 칸트의 이론을 중심 개념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칸트 의무론의 큰 특징인 동기주의, 도덕 지상주의, 보편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군대윤리적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은 앞선 공리주의적 접근이 결국은 '강자의 자기합리화'로 흐를 위험이 있음에 유의하며 군대윤리는 가변적 성격의 규범이 아닌 정언적 내용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덕윤리는 기존의 규칙 중심의 윤리에서 벗어나 덕 중심의 윤리를 지향하는 입장으로,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접근이 '자기 합리화'나 '융통성 없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덕윤리의 군대윤리적 의의는 덕윤리의 큰 특징인 개인의 유덕한 성품의 강조와 구체적 상황에 맞는 실천적 지혜의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5)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서울: 울력, 2012), p.17.

4장은 3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윤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논쟁점 두 가지에 대해 검토한다. 첫 번째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 이론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경제적·물질적 가치와 비교하여 군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찰한 다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이론을 검토한다. 이 때,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적 이론들의 적합성은 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다음으로 명령에 대한 복종의 문제는 최초 군대윤리 개념을 도입하게 만든 오래된 논쟁으로, 군에서의 복종의 중요성과 더불어 무조건적 복종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군인으로서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명령과 복종'이지만, 한편으로는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으로 인해 다양한 비도덕적, 비양심적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 한계, 그리고 진정한 명령과 복종의 의미에 대하여 탐색한다.

이상의 논의과정을 토대로 5장에서는 군대윤리 교육을 위한 과제 두 가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과제는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필요성이다. 이는 군인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군대윤리적 덕목에 일치하는지를 논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때,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을 살펴본 뒤, 이를 보완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의 의의를 살펴본다. 이 때, 의사결정 모델의 핵심 이론은 4-1장에서 검토한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 이론이 될 것이고, 의사결정 모델의 방법은 4-2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또 다른 과제는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의 필요성으로, 이는 규칙 중심적, 관료제적 성격이 강한 군대 집단에서 덕윤리가 교육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적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유의미한 비교대상인 대한민국 3군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로 한정하고, 각 사관학교의 요람, 학칙 등을 통해 덕윤리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방법, 그리고 한계점 등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군대윤리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군대윤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우선, '군대윤리'개념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것의 의미와 포함하는 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군대윤리가 하나의 직업윤리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군인의 전문직업적 요소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 중, 전문직업이 가지는 성향을 확인한 후, 여기에 군인과 군대윤리가 합치하는지를 검토한다.

1. 군대윤리의 개념

1) 군대윤리의 등장배경

'군' 또는 '군인'이라는 개념이 인류의 역사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오래된 개념인 반면, '군대윤리'는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니다. 이는 서론에서도 이야기하였듯 군대와 군인의 전통적인 덕목이 용맹함, 강력함, 충성심 등이었지 도덕성 자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윤리'라는 개념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헌팅턴이 1950년대에 "군인정신은 민군관계 차원에서 직업군인의 윤리"라고 정의한데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팅턴에 따르면 군대는 하나의 전문 직업윤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전문직업의 특성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헌팅턴에 의해 출발된 '직업군인 윤리'라는 용어는 미국 사회에서 '군대윤리'라는 일반적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었다.[16]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헌팅턴이 군대윤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군인에 대한 전문직업적 특성의 인정에서부터

16) 이광보 외, 『군대윤리』(인천: 진영사, 2010), p.50.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부터 군대라는 조직과 군인이라는 집단이 존재하였지만 이것이 전문직업의 형태로 존재하였다기보다는 보수를 위해 모이고 신분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는 형태를 보였다면, 근대 이후에는 군의 규모나 무기체계의 발달 등으로 군인이 하나의 전문직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인의 직업윤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헌팅턴에 의해 '군대윤리'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다면, 그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게 된 것은 미국의 베트남전에서의 패전 때문이었다. 더욱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얻은 교훈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군대는 망한다는 진리'로, 비윤리적인 군대는 군기가 문란해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17]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도덕적 타락은 군사작전과 미군 내부의 문제 모두에서 발견된다.[18] 우선, 미군의 군사작전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남베트남·북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폭격했는데, 투하된 폭탄의 양이 800만 톤 이상이었다. 이것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국 전체가 사용한 폭탄보다 무려 세 배나 많은 양으로, 그 파괴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640개와 맞먹는다.[19] 이러한 공습에서는 '네이팜탄'이라는 젤리형 가솔린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가솔린이 발화하면서 젤리처럼 사람 몸에 눌어붙도록 만든 철저한 인마살상용 무기였다. 이러한 공습을 통해 베트콩과 민간인 약 150만~2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통계상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많은 민간인을 죽인 병사들이 표창을 받는 일도 흔했다.

이러한 군사작전상의 도덕적 타락은 미군 내부의 도덕적 타락으로 고스

---

17) 조승옥 외, 『군대윤리』(파주: 집문당, 2010), p.15.

18) 아래에서 제시된 미군의 도덕적 타락 사례는 [Jonathan Neale, 정병선 역, 『미국의 베트남 전쟁-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서울: 책갈피, 1992)]에서 인용하였다. 특히, 미군의 비도덕적 군사작전의 사례는 '3장-전쟁의 양상' 에서 주로 인용하였으며, 미군 내부의 비도덕적 사례는 '6장-사병들의 반란' 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인용 내용 중 세부 인용이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인용 표기를 함께 첨부한다.

19) James Gibson, *The Perfect War : Technowar in Vietnam* (Boston, 1986), p.319, 재인용.

란히 이어졌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전체 기간 동안 20만 6000명이 징집기피 혐의로 연방 법원에 출두했으며[20] 미군 병사의 탈영율은 평상시보다 3배나 증가했다.[21]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의 불안감과 반란감은 곧 마리화나·아편·헤로인으로 연결되었고, 심지어 1971년 7월 4일 쭐 라이 해변에서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전쟁에 항의하는 마리화나 파티를 벌이기도 하였다.[22] 베트남전에서 미군 내부의 도덕적 타락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모습이 소위 프래깅(Fragging)이라 불리는 하극상 현상이었다. Fragging이란 '파편 수류탄'의 영어단어 fragmentation grenade의 줄임말로써, 위험한 수색정찰 임무를 계속 부과하는 호전적인 장교나 부사관의 숙소에 수류탄을 던져 넣는 행위였다. 베트남 현지 미군에서만 800~1000번의 프래깅 시도가 있었으며, 이들 중 80퍼센트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

정당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던 미군들이 자신을 둘러싼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로 마약이나 항명, 프래깅과 같은 비도덕적 행동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군대의 사기나 전투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베트남에서 미군의 패배는 결국 무기체계나 병력, 전술이 아닌 '도덕의 몰락'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상처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반드시 "도덕적 르네상스"를 체험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첫 번째의 과제는 장교들이 보다 책임감을 굳게 갖고 도덕적인 양식과 직업적인 고려를 조화시키는 것[23] 즉, 군대윤리의 확립과 이의 실천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과거 미군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군대윤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 사회의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24]으로 부각되고 있다. '군이 사회와 같은 도덕적 수준을

---

20) David Cortright, *Soldiers in Revolt:The American Military Today* (N.Y.: Garden City, 1975), p.5 재인용.
21) 위의 책, pp.10-15 재인용.
22) 위의 책, p.34 재인용.
23) 미국 국방대학원 편저, 백종천·이창훈 역, 『군대의 윤리』(서울: 탐구당, 1989), pp.96-97.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사회가 가지지 못하는 군의 도덕성을 배워야 한다.'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군과 사회 모두를 위한 군대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2) 군대윤리의 의미와 범위

군대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와 연구 기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또는 군인이 지켜야 할 가치, 태도, 행동의 규범체계"[25]로, 김진만·박균열은 "군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인 혹은 군대가 마땅히 따라야하는 행위의 원리"로, 이광보 등은 "윤리학의 일반적 원리를 전쟁과 전쟁 수행 중의 군인의 행동에 응용하는 일종의 응용윤리"[26]로, 가브리엘(Gabriel)은 "군인의 행위와 규범에 관한 윤리학적 접근"[27]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군대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군대윤리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내었다고 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김진만·박균열은 군대윤리를 '군의 임무 수행'에 한정되어 정의하고 있고, 이광보 등은 군대윤리를 '전쟁윤리'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면, 가브리엘의 정의는 광범위하여 다소 모호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군대윤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앞선 정의들과 같은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군대윤리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범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대윤리가 적용되는 다양한 범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군대윤리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군대윤리의 학문적 위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윤리학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이론 윤리학

---

24)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 『현대의 군대윤리』(공군교재창, 2000), p.113.
25) 국방부, 『군대윤리』(국방부, 2002), p.53.
26) 이광보 외, 앞의 책, p.55.
27) Richard A. Gabriel, *To Serve With Honor: A Treatise on Military Ethics and the Way of the Soldier* (Westport: Greenwood Press, 1982), p.29 재인용.

(theoretical ethics) 혹은 도덕 형이상학(metaphysics of morals)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 윤리학(practical ethics) 혹은 응용 윤리학(applied ethics)이다.[28] 응용 윤리학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각기 적절한 윤리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29]라 보았을 때, 군대윤리는 응용윤리의 한 분야이다. 또한 직업윤리가 "직업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연구하는 것"[30]이라 보았을 때, 군대윤리는 군대라는 집단, 혹은 군인이라는 직업의 윤리이다. 일찍이 뒤르껨(Emile Durkheim)은 "직업윤리의 본성이 그 집단의 본성으로, 집단 구조의 힘이 클수록 그 집단에 특유한 도덕적 규칙들의 수가 더 많아지며, 직업윤리가 더 발전하고 더 잘 작동할수록 직업 집단 자체의 안정성이 커지고 조직도 더 좋아질 것"[31]이라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군대윤리는 "응용윤리이자 직업윤리의 하나로, 군대라는 직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적절한 윤리 이론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대라는 직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곧 군대윤리에 대한 다중적 의미를 뜻한다. 군대 집단이 가지는 가장 큰 도덕적 문제는 "군대 이외에서 가장 심한 말로 정죄하거나 정상(正常)이라 할 수 없는 행위"[32]인 전쟁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곧 전쟁 행위가 군대의 가장 두드러진 기능이자 군대윤리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임을 의미한다. 즉, 의사의 가장 두드러진 기능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의료윤리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군대의 전쟁 행위(또는 무력의 관리)는 군대 집단의 특징적 기능이고, 이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군대윤리의 핵심이다. 전쟁 행위에 관한 윤리적 탐색은 '전쟁윤리

28) 박찬구(2006), 앞의 책, p.27.
29) 박찬구(2012), 앞의 책, p.11.
30) 김대군・박균열, 『현대인의 전문직업윤리』(서울: 철학과현실사, 2006), p.50.
31) Emile Durkheim, 권기돈 역, 『직업 윤리와 시민 도덕』(서울: 새물결, 1998), pp.57-58 참고.
32)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 앞의 책, p.117.

(ethics of war)' 또는 '정당(正當) 전쟁론(just war theory)'으로 불리며, 이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즉 '전쟁의 도덕성(morality of war)'에 관한 것과 '전쟁에서의 도덕성(morality in war)'에 관한 것이다.[33] 전쟁윤리의 구체적인 항목은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전쟁윤리에 대한 고전적 이론가인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cquinas), 그리고 랙키(Douglas P. Lackey)를 포함한 현대의 이론가들의 공통분모를 모아보면, 전쟁윤리가 대체로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동의한다.[34]

<표-2> 전쟁윤리의 윤리적 원칙

전쟁의 도덕성 (morality of war, jus ad bellum)	전쟁에서의 도덕성 (morality in war, jus in bello)
정당한 명분(just cause)	비례성(proportionality)
합법적인 권위(right authority)	
올바른 의도(right intent)	
비례성(proportionality)	차별성 또는 비전투원의 보호 (discrimination, or noncombatant protection)
확실한 성공 가능성 (resonable hope of success)	
최후의 수단(last resort)	

이러한 전쟁윤리는 개인의 폭력 사용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나,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자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쟁에서의 폭력 사용이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 안에서 정의롭고 분명하게 제시된 목표를 위한 경우,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한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폭력이

33) Malham M. Wak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Boulder, 1979), p.238.;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New York, 1977), p.21 재인용.

34) 이종원, "정당전쟁론에 대한 윤리적 탐구", 중앙철학연구소, 『철학 탐구』, 제 23권, 2008, pp.147-173.;박인성, "전쟁의 도덕성:이라크전쟁과 연관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 41집, 2006, pp.51-76 참고.

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국가의 폭력 사용도 정의로운 목적과 적절하게 제한된 수단에 따른 것이라면 충분히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윤리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인 목적의 이론과 수단의 이론으로 구성되는데, '전쟁의 도덕성'으로 알려져 있는 전자의 이론은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또한 '전쟁에서의 도덕성'으로 알려져 있는 후자의 이론은 전쟁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설정한다.[35] 결국 전쟁윤리의 핵심은 전쟁이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쟁의 규모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36]

전쟁윤리가 '군대'라는 집단의 윤리, 또는 집단의 특징적 기능에 대한 윤리를 뜻한다면, 집단 안의 개인인 군인의 도덕성에 대한 내용도 역시 군대윤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는 의료나 법 관련 전문직이 기능 차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청받듯이 군전문직 역시 그러함을 의미한다.[37] 이러한 군인의 도덕성은 다시 공적 도덕성과 사적 도덕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말한다. 즉, 부대원을 관리하고, 부대를 운영하며, 무기체계를 구매・사용하고, 전쟁(전투・작전 등)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일련의 공적 행위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군인의 정신과 자세를 말한다. 이러한 군인의 공적 도덕성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공익을 추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무사하게 봉사하며, 청렴결백해야하고,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38] 등은 군인의 공적 도덕성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덕목들이다. 또한, 군인에게는 전쟁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도덕성이 있는데, 이는 흔히 '군인정신'이라는 용어로 불리

35) Peter Singer, 김성한 등 역, 『응용윤리』(서울: 철학과현실사, 2005), pp.266-267.
36) 이종원, 앞의 글, p.150.
37) Jessica Wolfendale, "Professional Integrity and Disobedience in the Military", *Journal fo Military Ethics*, Vol. 8, Iss. 2, 2009, p.127.
38) 김대군・박균열, 앞의 책, p.117.

는 일련의 덕목들이다. 「군인복무규율」[39]에 명시된 군인정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 4조 [강령] 3항 [군인정신]
>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명예와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의 정신 중 일부는 다른 공직자나 일반 사회의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신일 수 있지만 그 본래의 성질은 전투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며, 더 근원적으로는 군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군인들의 의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기준이 된다.[40] 즉, 앞선 공직자의 직업윤리가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직업 일반의 윤리에 가깝다면 뒤의 군인정신의 덕목들은 군인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직업별 윤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영역의 윤리가 조화되어 군인의 공적 도덕성을 이룬다.

군대윤리의 마지막 범주인 군인의 사적 도덕성은 군인이라는 신분에 의해 발생되는 '군인의 사회 속에서의 도덕성'을 말한다. 앞서 군대윤리를 "응용윤리이자 직업윤리의 하나로, **군대라는 직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적절한 윤리 이론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라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군대윤리의 범주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러한 사적 도덕성이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대는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라 일컫는 폭력과 살상을 허용 받은 집단으로서, 이러한 폭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나 집단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공적

---

39)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타법개정], 이하 군인복무규율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의 현행 법령을 검색하여 제시하였다.
40) 박균열, "한국군의 군인정신 덕목:평가와 대안",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 55권, 2002, p.183.

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물론, 군대윤리의 범주를 공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군인에게 과도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앞선 뒤르껨의 직업윤리에 대한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집단 구조의 힘이 클수록 그 집단에 특유한 도덕적 규칙들의 수가 더 많아지며 필요시 '인명의 살상'행위까지도 허용 받은 군인은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해 더욱 폭넓은 도덕적 규칙을 요구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일반인들 간에 시비가 붙어 주먹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이가 극히 한정되지만 전문 복서나 격투기 선수가 일반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결국 군인의 사적 도덕성은 앞선 두 영역의 군대윤리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군인이 가지는 직업적 특성이나 공인으로서 가지는 권한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군인의 사적 도덕성이 전쟁윤리와 공적 도덕성을 관통하여 도출된 것이라면, 이를 통해 군인이라는 직업의 본질이 곧 도덕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 직업이 가지는 특징적 기능으로 인해 공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군인의 모습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능수능란하게 조작하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이웃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봉사정신, 희생정신 또는 솔선수범의 자세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도덕성이 결여된 유능한 군인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41]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성을 인정받을 때에야 비로소, 군과 군인의 도덕성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

41) J. Joseph Miller, "Squaring the Circle:Teaching Philosophical Ethics in the Military", *Journal of Military Ethics*, Vol. 3, Iss. 3, 2004, pp.203-204.

2. 군 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

앞에서 군대윤리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의미 그리고 군대윤리를 포괄하는 범위를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군대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겠다. 즉, 군대윤리가 하나의 직업윤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군직(軍職)이 전문직업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 절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직업적 의미에서 군대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전문직업의 개념과 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1) 직업주의와 군대[42]

군대의 발전과정은 학자에 따라 전쟁의 종류별(프레스톤(Richard A. Preston); 고대전쟁-봉건전쟁-제한전쟁-총력전-냉전), 전쟁시대별(라이트(Quincy Wright); 화기응용 전쟁시대-군직업화 전쟁시대-자본주의 전쟁시대-전체주의 전쟁시대-냉전시대), 군대조직의 발전과정별(케스텔언(Georges Castellan); 고대의 군대-중세의 군대-군주제의 군대-국민군대-직업군대), 상비군 발전 단계별(바그츠(Alfred Vagts); 상비적 용병군-상비적 왕군-상비적 국민군)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군대의 발전과정을 직업으로써 구분하면 ①용병군대, ②상비군대, ③국민군대, ④현대 직업군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용병군대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사회에서 군대가 직업으로서 전문화가 되어가는 과정은 14세기에 시작된 국가의 통합과정으로부터 18세기의 산업혁명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세기에 스위스·이태리·독일 등에서는 국왕을

42) 본 항은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서울: 북코리아, 2005), pp.126-150의 내용을 주로 발췌・인용하였다.

대신하여 전투를 계약하여 수행해 왔는데, 용병군대는 장교나 병사의 출신지가 유럽 각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국왕에만 충성을 다짐한 것은 아니었다. 용병장교는 일종의 전쟁 청부인으로서 일정 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국왕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료를 지급받아 그것을 부하들에게 분배했다. 용병군대는 전쟁이 끝나면 다른 국왕 밑으로 전쟁을 구하여 이동해 갔으며, 어떤 때는 전쟁 중에 충분한 보수를 받게 될 것 같지 않으면 전선에서 이탈하거나 더 보수가 좋은 국왕에게 붙는 자도 있었다. 또 어떤 용병군대는 풍요로운 토지를 골라 주둔하고 그 곳 주민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약탈을 행하였다. 용병군대는 책임성, 전문성, 단체성의 기초가 되는 충성심, 규율성 및 희생정신과 같은 직업상의 공통윤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장교들은 일종의 사업가이었지 현대적 의미의 직업군인은 아니었다.

나. 상비군대

용병군대를 대신하여 귀족출신 장교가 임명된 아마추어군대가 나타난 것은 영구적으로 영토를 보호하고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 상비군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용병군대는 전쟁이 행하여지는 시기인 봄에서 가을까지만 고용되고 전쟁이 없는 겨울철이나 평화시에는 해산되었으나, 상비군은 항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용병군대의 출신지가 유럽 각 지역의 장교 및 병사로 구성되어 국왕에 대한 충성심, 책임성, 규율성, 동질성도 희박하였던 반면, 상비군대는 자국민만으로 구성되어 충성심, 규율성, 동질성 및 희생정신과 같은 직업상의 공통윤리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 상비군의 장교는 국왕이 자기의 의사를 강요할 수 있었던 귀족출신의 자제들에 국한하여 선발하였고, 병사들은 지원제로 입대하여 8~12년 동안 장기 복무하게 되었다. 상비군대는 절대왕정의 권력 기반으로서 화폐의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왕조의 안전을 위해 그 숫자를 증가시켜왔고, 그 성격도 상비용병으로부터 점차 상비왕군으로 변화하면서 마침내는 국가적인 상비군으로 발전하였다.

다. 국민군대

국민전체의 총력전을 낳았던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사뿐만 아니라 군대사에 끼친 영향도 컸다. 예컨대 루이 16세가 의회에 대항하는 데 상비군이었던 왕군을 이용했기 때문에 왕정을 폐지시키고 정권을 장악하려던 평민계급도 왕군에 대항할 국민군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민군대는 귀족장교, 지원병, 또는 용병으로 구성되는 왕군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참여하는 군대였다.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전쟁이 단순히 군주와 군주 간의 투쟁이 아닌 국민과 국민 간의 투쟁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근대국가는 군사국가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군대는 엄격한 훈련 및 규율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이요, 애국적인 정열이 중시하게 되었다.

라. 현대 전문직업군대

군대의 전문직업화는 절대군주시대가 끝나면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국가의 탄생이 그 바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혁명에 의해서, 프러시아에서는 1807년의 군제개혁에 의해 귀족계급의 모든 특권이 폐지되었고 모든 시민에게 장교직이 개방되었다.[43] 이 결과로 장교직의 매관제도가 폐지되고,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업상의 지위와 역할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장교로 임관되는 조건으로서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프러시아에서는 장교로 임명되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평시에는 교육과 전문지식의 습득을, 전시에는 탁월한 용기와 판단력을 요구하였다.[44] 이를 위해 1810년에 사관학교를 세우고, 여기에서 보병 및 기병은 3년간을 그리고 포병과 공병은 4~5

43) 아래의 내용은 프러시아정부의 1807년 8월 6일 선포된 장교임용령에 관한 포고령이다. 여기에서 군 직업주의의 기본요강을 확인할 수 있다.
- 장교임용령에 필요한 유자격은 평화시에는 교육과 전문적 지식이며, 전시에는 뛰어난 용기와 훌륭한 지각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자질을 구비한 자는 군대의 최고직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과거 군대의 모든 계급적 특권은 철폐되며, 모든 사람은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평등한 의무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44) John Winthrop Hackett, *The Profession of Arms* (the Times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62), p.265 재인용.

년 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이러한 군대와 장교에 대한 교육의 강화는 전쟁 수행방식의 변경에서 기인한다. 즉,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투를 할 때에 모든 군인들은 동일한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창과 칼을 가지고서 적과 대항하였으나, 이제는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전쟁의 수행방법이 복잡해지고, 무기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분야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조정하고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현대 장교단이 대두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1800년대 이전에는 직업장교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1900년에는 그와 같은 단체가 사실상 모든 강대국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45]

2)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군인과 군대윤리

가. 전문직업의 개념

'전문직(profession)'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종교적인) 서약을 하다'라는 의미의 'profess'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전문직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이라는 점,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는 직업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병재 등은 전문직업에 대한 다양한 학자(그린우드(Ernest Greenwood), 그로스(Edward Gross), 구드(William J. Goode), 무어(Wilbert E. Moore), 파발코(Pavalko))의 정의를 종합하여 전문직이 "일반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이라 정의내렸다.[46] 또한, 추정훈은 전문직의 요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고도의 교육을 거쳐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고도의 훈련을 거쳐 기

45)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앞의 책, p.24.
46) 전병재 외,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서울: 사회비평사, 1995), pp.31-41 참고.

술을 습득한다. 둘째 자격이나 면허가 있다. 셋째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한다. 넷째 법령상 또는 기타 이유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독점적이며 배타적으로 사용한다.[47]

한편, 군 직업을 하나의 '전문직업(profession)'으로 체계화하여 고찰한 고전적인 이론은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에게서 비롯되었다.[48] 헌팅턴은 그의 대표 저서인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근대의 장교단은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이고, 근대의 군 장교는 일종의 직업인이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다."[49]라는 문장으로 시작할 만큼 군인(장교)의 전문직업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헌팅턴은 일반적인 전문직업(profession)의 특성으로 "전문성(expertise)과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단체성(corporateness)"[50]을 제시한다.

먼저, 전문성(expertise)이란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며, 비전문가와 구별되는 객관적 기준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통상의 기능이나 기술과 구분되는데, 후자가 현존하는 기술을 배움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면, 전자는 전문직인 지식(professional knowledge)으로서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기술적인 면은 그 자체에 의해 운영되는 단편적 교육인 반면, 전문직업인의 교육은 폭넓고 자유로운(liberal) 문화적 소양 위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의 보통 교육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다음으로 책임성(responsibility)은 구체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말한다. 즉, 전문적 직업인은 사회의 존립이나 기능에 있어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 사람으로, 건강이나 교육 또는 정의의 증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만약 의사나 교사, 법률가 등이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고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능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이미 전문직업인이 아닌 것이

47) 추정훈, 『윤리의 본질과 직업윤리』(서울: 형설출판사, 2003), pp.285-286.
48) 조승옥 외, 앞의 책, p.142.
49)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앞의 책, 2011, p.7.
50) 위의 책, p.8. 이후 전문직업에 대한 세 특성은 같은 책 pp.8-11의 내용을 주로 발췌・인용하였다.

다. 이러한 전문 직업인의 사회적 책임성은 금전적 보수를 떠나 직업상의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성(corporateness)은 전문직업의 구성원이 가지는 유기적 통일체 의식으로서 아마추어와는 다른 집단이라고 하는 공통된 자각을 뜻한다. 이러한 단체성은 해당 직종을 위한 교육, 훈련, 업무, 사회적 책임 등을 공유하며 전문적 능력의 기준을 격식화한다. 이들은 협회조직 또는 관료조직 형태의 집단을 구성하는데, 이를 통해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형태를 취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다.

나. 군 전문직업주의

헌팅턴은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한 어떤 전문직업도 이상적인 전문가 유형의 성격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교라고 하는 직업은 전문직업의 근본적인 성격에 부합하고, 그 기준에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전문성의 영역에 있어서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해주는 군의 특유의 분야가 '무력의 관리'이다. 구체적으로, 군대에는 육상, 해상, 공중에서 각각 무력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장교가 있으며, 이들은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력의 사용을 지휘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다. 장교의 기능은 기교(craft)도 아니고 기술(art)도 아닌, 포괄적인 연구와 훈련이 요구되는 극히 복잡한 지적 기능이며 그 본질이나 위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51] 다음으로, 책임성은 군인의 전문직업적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이다. 군인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무력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회에 특수한 책임을 지며, 사회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그것의 사용이 허용된다. 의사나 법률가와 같은 다른 직업들도 어느 정도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전문직업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한, 장교에게 자신의 업무에 동기를 주는 것은 그의 기능에 대한 애정과 그 기능을 사회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고 하는 사회적 의무관념이다. 장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전문성을 함

51)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앞의 책, pp.12-15.

부로 사용한다면 사회조직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52] 마지막으로, 단체성의 측면에 있어서 군인 집단은 공공연하게 관료화된 전문직업이다. 군인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군인과 민간인은 공적으로 제복과 계급장에 의하여 구분된다.[53] 또한 군 직업의 존재는 국가에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직업군인을 통해 군대를 유지하고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조직을 유지한다. 이런 집단적인 군대의 성격은 전문직업으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며, 전문직업은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대부분을 집단의 축적된 경험에 의존한다.[54] 결국, 군인이라는 직업은 헌팅턴을 포함한 다양한 학자가 정의내리는 전문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인의 직업윤리인 군대윤리가 성립한다.

52)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앞의 책, pp.16-18.
53) 위의 책, pp.18-20.
54) 박균열 외, 『국가안보와 균대윤리』(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p.436.

III.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정당화

이 장에서는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적 정당화를 시도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의 윤리를 다양한 윤리학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그 의의나 한계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윤리이론을 통해 군대윤리를 바라볼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 즉 군대윤리를 평가할 평가 잣대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이론을 모두 적용하여 군대윤리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일 뿐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윤리학의 여러 분야 중, 응용 윤리의 영역에 적용할 만한 대표적 이론으로 여겨지는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55]를 중심으로 군대윤리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려 한다. 이러한 정당화의 시도는 각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 군대윤리에 대한 각 이론적 접근방법, 각 이론의 군대윤리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1. 공리주의적 접근

1) 공리주의의 개념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해 창시되어 그의 추종자인 밀(John Stuart Mill)에 의해 세련되게 다듬어진 공리주의는 영국 도덕 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과 밀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공리

55) 박찬구(2012), 앞의 책, p.17.

주의라는 도덕 이론에 관한 모든 논의에 있어 고전적인 근원의 역할을 한다.[56] 공리주의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며, 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쾌락주의의 기본 입장을 취하되, 여기에 사회적 의미를 도입한 것이다. 즉, 자기 개인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중적(公衆的) 쾌락을 역설한 것이다.[57]

벤담과 밀의 이론인 고전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 결과를 판단할 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행복이나 불행의 양이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관련이 없다. 셋째, 개개인의 행복은 똑같이 중요하다.[58] 첫 번째 명제는 흔히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라고 불린다. 이는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행위의 의도나 목적 등이 아닌 순수한 결과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으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의 순수한 의도나 목적은 타인이 완벽하게 알 수 없으며, 개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결과주의적 원칙은 영국의 경험론과 효용론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조되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 내면의 것이 아닌 관찰 가능한 것을 통해 선악을 나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짐을 들어주다 그것을 떨어뜨려 망가뜨리는 경우나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똑같이 옳지 못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두 행동은 모두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나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두 행동에서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명제는 '행복주의(eudaemonism)'이다. 첫 번째의 명제를 통해 행위의 결과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면, 두 번째의 명제는 그 결과가 행복

56) Rovert L. Arrington, 김성호 역, 『서양 윤리학사』(파주: 서광사, 2003), p.491.
57) 박찬구(2006), 앞의 책, pp.85-86.
58) James Rachels, 노혜련 등 공역, 『도덕 철학의 기초』(서울: 나눔의집, 2009), p.199.

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리주의가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옳은 행위의 유일한 기준은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불행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벤담은 “모든 행위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로, 이는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하였으며, 밀은 “행복은 바랄만한 것이고, 더욱이 목적으로서 바랄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바랄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다.[59] 이처럼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삶’을 곧 도덕적 선이라 본 공리주의의 입장은 그 이전의 일반적인 도덕 원칙이었던 신의 명령이나 추상적 규칙으로부터 인간의 실제 삶으로 도덕의 원리를 끌어 내렸다는 점에서 많은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공리주의의 마지막 명제는 ‘보편주의(universalism)’이다. 보편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쾌락주의와 공리주의를 구분시켜주는 결정적 단서로,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사회적 단계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즉,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결과로 드러나는 행복이되, 이 행복은 나의 것과 동일하게 타인의 것, 사회의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앞선 공리주의의 두 원칙에 보편주의가 더하여 공리주의의 대표적 명제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 옳은 일이며, 그 행복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 또는 사회 전체적인 총합으로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록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추구할 만한 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리주의를 통한 사회 정책 입안이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에는 개별 행동이나 사안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결과’를 선택한다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행동해도 그 행동의 결과가 내가 의도한 뜻대로 되지 않

59) 박찬구(2006), 앞의 책, p.90 참고.

을 때도 있으며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일의 결과가 더욱 행복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도덕적 기준으로 공리주의가 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라 지적되었다. 따라서 최근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act-utilitarianism)라 칭하면서, 규칙이나 원칙의 준수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리주의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를 규칙 공리주의(rule-utilitarianism)라고 부른다. 행위 공리주의는 매 행위 때마다 행복의 총량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의 준수 혹은 원칙의 준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 그 까닭은 규칙 혹은 원칙의 준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행복의 총량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종종 규칙이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되고 발전된 형태의 공리주의가 규칙공리주의라고 볼 수 있다.[60]

2)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방법

본 항은 군대윤리를 공리주의적 시각을 통해 검토한다. 즉, 공리주의가 취하는 입장이 군대윤리의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되, 공리주의적 시각은 앞선 항에서 살펴보았던 공리주의의 세 특징인 결과주의, 행복주의, 보편주의의 틀을 사용한다.

가. 결과주의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일은 준비도 덜 하게 되고 그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는 반면, 아주 중요한 일은 많이 준비하고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적과 무관한 퀴즈에 대해서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지만 취직을 위한 영어시험을 치를 때는 준비하는 정

60) 이민수, 『전쟁과 리더』(서울: 철학과현실사, 2013), p.17.

도나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마음의 강도가 훨씬 크며, 심지어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의 강도가 클수록 그것을 이루고자(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많이 하게 되며, 그 수단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삶에 미칠 영향'이 가장 강력한 경우는 무엇일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삶의 종결, 즉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61] 즉, 결과적으로 죽음을 회피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을 군대만의 독특한 임무인 '전쟁' 상황에 접목시켜 본다면 군대문화의 결과주의적 성향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발발할 때마다 참혹한 피해와 상처를 남긴 채 인간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발생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에 참가하는 전투원의 희생뿐 아니라 전쟁과는 무관한 민간인들도 피해자가 된다. 또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한 산업시설과 주변 환경의 파괴는 가공할 피해를 남긴다.[62]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예방을 '무력의 관리'라는 이름으로 담당하고 있는 군대이기에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적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며, 이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군에도 해당된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담 "All is fair in love and war.-사랑과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하급자의 인사에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는 상급자의 우스갯소리는 군인과 군대의 결과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 한편, 군에서 결과주의가 강조되게 된 계기와는 별개로 결과주의적 성향이 갖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나의 생명의 연장은 곧 상대방의 생명의 종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가시

61)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에 '삶의 연장' 과 같은 항목이 들어 있지 않겠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62) 이종원, 앞의 글, p.149.

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지휘부의 강요에 의해 암묵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용인하였으며, 베트콩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무고한 베트남인(여기에는 물론 어린아이도 포함된다.)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63] 또한 평시에도 지나친 결과주의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거나 실적을 위해 부대원을 혹사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 행복주의

행복주의는 '대부분의 인간이 행복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적 차원을 넘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혹은 '행복은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당위를 주장한다. 즉, 행복주의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혹은 고통을 감내하는 행위는 선하지 못한 행동이자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러한 행복주의에 따르면, '무력의 관리'라는 군인의 본연의 임무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관리된 무력의 사용은 곧 상대국의 군대・국민・시설 등에 대한 파괴와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통의 감소와 행복의 증진이라는 행복주의와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의 행복주의와의 불일치는 고통을 가하는 '나'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다시 말해, 나와 나의 국가의 안위를 위해 상대방에게 무력을 가하는 나 자신도 무력의 사용 그 자체가 결코 행복한 행위라거나 즐거움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예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경우 국가의 명에 의해 법률에 의해 정해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얻는 자부심은 있을지언정 자신이 겨눈 총구로부터 한 인생이 마감된다는 사실 자체는 큰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집행관을 동시에 사형 업무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군인, 또는 군대가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보았던 군의 직업주의와도 관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적으로 살펴본 군대의 발전과정은 [용병군대 → 상비군대 → 국민군대

63) Jonathan Neale, 정병선 역, 앞의 책, pp.100-130 참고.

→ 현대 직업군대][64]의 형태를 보였는데, 이러한 발전과정의 핵심은 군직의 전문성(專門性) 향상과 보수(報酬)로부터의 직접적 관계성의 단절이었다. 이 중, 후자의 내용은 헌팅턴이 “금전적 보수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적 자격을 가진 자의 제일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보수는 직업상의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65]이라고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통해 군인이 행복주의를 따를 수 없음, 혹은 따르지 말아야 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물질 중심적이고 경제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보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음은 곧 군직이 소명의식을 통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는 행복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 보편주의

공리주의에서 보편주의의 원칙은 행복을 추구하되, 나만의 행복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만 행복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에 있어서 지금 나의 행복을 손해 본다는 것은 그것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언젠가는 나도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정한 규칙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보편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공리주의는 “입법이나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이론”[66]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나만의 이익과 행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이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 등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성은 군대윤리의 세 가지 영역 중 군인의 공적 도덕성 영역

64) 조영갑, 앞의 책, p.127.
65)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앞의 책, p.10.
66) 박찬구(2006), 앞의 책, p.112.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이나 규정, 법규 등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정된 예산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데 어떤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이 군의 전투력 측면에서 용이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볼 때, 혹은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대원의 휴식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등에서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보편성의 원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편성을 전쟁에서의 윤리에 접목시켜 전쟁규칙 등을 논하는 시도가 간혹 있지만 연구자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업무인 반면, 공리주의의 보편성은 개인의 행복을 보편적인 범위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를 전쟁의 개념에 접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더욱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다.

3)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방법의 의의와 한계

공리주의는 그동안 많은 철학자와 정치가들 사이에서 전쟁윤리를 정당화하는 합당한 이론으로 사용되어왔다.[67] 이들이 공리주의를 통해 전쟁윤리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의 목적은 상대방의 공격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예방함을 뜻한다.[68] 즉, 비록 전쟁이라는 것이 폭력과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악(惡)의 성질을 함축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큰 악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는 정당화되고 수행의 근거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는 전쟁 종결 후의 상황을 가정한다는 결과론적 성격과 고통을 줄이고 자국의 안녕(행복)을 증진시킨다는 행복주의적 성격, 그리고 이를 보편화 가능하다는

67) 이민수, 앞의 책, pp.209-201 참고.
68) 김진만・박균열, 『군대와 윤리』(서울: 양서각, 2010), p.345.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녀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과 잘 맞아 떨어진다.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전쟁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류 역사 중 9할 이상의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전쟁'[69]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형식의 평화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현실주의적 대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하고, 간접적으로는 '전쟁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제한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의의는 공리주의가 인간 본성에 비추어 의무감 등의 이론보다 더욱 납득이 쉽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손실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 전쟁터는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소임을 감안[70]한다면 절대주의, 혹은 의무론적 규칙보다 나의 안위를 합당한 논리로 지킬 수 있는 공리주의적 접근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당화를 통해 군인 개인은 불가피한 악을 행함에 따른 죄책감을 덜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작전 수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71]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마지막 의의는 복잡한 군사작전의 수행가능성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급박한 아군의 위협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의 주둔지역에 공중 폭격을 감행하거나 아군의 위치를 확인한 민간인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또는 적진에서 고립되어 사살되기 직전의 병사를 구출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리주의는 다른 윤리학적 이론보다 간단한 해답을 제공

69) 이용호, 『전쟁과 평화의 법』(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1), pp.1-2 참고.
70) 이민수, 앞의 책, pp.188-189 참고.
71) 여기서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높임은 개인이 지나친 죄책감이나 의무감에 사로잡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함을 예방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살상을 쉽게 하는 것, 혹은 포로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고문하거나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준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해 준다. 그것은 공리(公利)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 해당 군사작전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고통의 크기와 얻어지는 이익, 또는 행복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계산 방법에 의하면 해당 군사작전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욱 크다면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옳고 피해가 더욱 크다면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급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공리주의식 방법은 분명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공리주의는 군대윤리, 특히 전쟁윤리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주목받았으며, 일정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공리주의를 통해 군대윤리와 전쟁윤리를 논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연구자는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결과 예측의 어려움'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 가능성'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리주의가 표방하는 결과주의적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인간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하는 회의주의적 시각이다. 고금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듯이 인간은 그 존재적 능력의 제약 때문에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현재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또한 현재보다 나은 상황을 전제로 행하여진 폭력의 정당성은 그것을 행한 사람의 개인적 신념의 문제이고, 개인적 신념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72] 따라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행한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의 근본 논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다른 한계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내용은 결국 첫째 내용과 연결되는데,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측, 혹은 사실은 나(또는 내가 속한 조직,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는 악을 막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형식의 합리화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살펴 본 군대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의의에서 두

72) 김진만・박균열, 앞의 책, p.346.

번째와 세 번째(인간 본성에 근거해서 납득이 용이함, 군사작전의 수행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줌) 역시도 '자기 합리화'에 의해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가 근본적으로 행복을 전제로 한 이론이므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결국 내가 사는 방법, 우리 부대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하는 형식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리주의식의 자기 합리화는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며, 하나의 예외는 장기적으로 더 큰 규모의 파괴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리주의는 전쟁윤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분명한 강점이 있다. 그것은 전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오직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원리는 전쟁의 결과를 포함한 주위의 상황을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한계는 입법이나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태생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전쟁윤리의 문제는 법률이나 규칙, 규정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하고 존귀하게 취급받아야 하는 인간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를 통해 군대윤리를 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위를 전쟁의 상황이 아닌 군인의 공적/사적 도덕성의 영역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규범을 제정하는 업무 또는 제한된 예산으로 더욱 나은 선택을 요하는 각종 사업 분야, 또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도덕성이 미칠 수 있는 적절한 범위가 어디인지를 탐색하는 작업 등에 적용시킬 수 있다.

2. 의무론적 접근

1) 의무론의 개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왜?'라고 하는 물음이 뒤따른다. 설령 실제로 이유나 근거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행동들에는 이유가 붙어 있기 마련이다. 고3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고, 다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또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이다. 학습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 행위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행위, 잠을 자는 행위와 같은 생리적 활동 역시 에너지를 얻어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유와 근거를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또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대답을 할 것이다. 누군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나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목적론적(teleological) 윤리이론이라면, 이와 반대로 도덕적 행동에는 부가적인 이유가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 의무론적(deontological) 윤리이론이다. 즉, 의무론적 윤리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데에는 별도의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적 만족이나 쾌락,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부차적 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애써 도덕적 행동을 위한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그저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에'라는 환원론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73]

의무론적 윤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로, 그의 윤리 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은 의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밖에 없다. 둘째, 도덕적 명령 혹은 의무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 혹은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 혹은 의무이다. 그러므로 행복도 결코 도덕에 우선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셋째, 우리의 의지가 무조건 따라야 할 도덕적 원칙은 보편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고의 도덕적 원칙은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네가 원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74]

첫 번째 원리는 흔히 '동기주의(motivism)'라 불리며, 공리주의의 '결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결과주의가 행위의 결과를 통해 도덕적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반해, 동기주의는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자의 동기를 도덕적 행위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와 무관한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남을 도와주었더라도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의도,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설거지를 돕다 접시를 깬 아이와 오로지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 청소를 한 아이의 경우, 동기주의적 입장에서는 결과주의와 반대로 전자의 아이가 도덕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엄마를 돕기 위함'이라는 선한 동기 때문인데, 이를 칸트는 '선의지(善意志, guter wille)'라 불렀다.

---

73) 여기서 환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무론 자체에 포함된 오류가 아님을 밝힌다. 이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부가적 근거가 없음에도 굳이 부가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며, 이는 의무론이 가진 약점이기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된다.

74) 박찬구(2006), 앞의 책, p.119.

두 번째 원리는 '도덕 지상주의' 또는 '엄숙주의'로, 도덕적 행동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뿐, 도덕적 행동을 위한 부가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도덕 지상주의는 목적론과 대비되는 의무론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내용으로, 도덕적 행동을 개인의 기호에 따른 선택사항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옳은 것을 그저 행할 뿐 다른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도덕 지상주의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행동할까, 하지 않을까?' 혹은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할까?'와 같이 선택을 하거나 의문을 가질 수 없는 무조건적 명령의 형태, 혹은 당위의 형태로 다가온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명령 방법을 우리는 정언명법(categorical imperative)이라 부르고, 칸트는 도덕법칙을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정언명법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원리는 '보편주의'로, 선의지의 기준이자 도덕 지상주의를 통해 강조한 도덕법칙의 두 정식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칸트는 이른바 '보편화 가능성 정식'이라 불리는 제 1정식("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75])과 '인격주의 정식'이라 불리는 제 2정식("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76])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곧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도덕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7]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남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일치시키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최고의 목적으로 대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칸트 의무론의 보편주의는 공리주의의 보편주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리주의의 보편주의가 개인의 '(결과적으로)드러나는 행복'을 보편적인 형태로 확산시켜야 함을 강조한 소극적인 보편주의라면, 의무론의 보편주의는 대상이나 수단에 관계없이 나와

75) Immanuel Kant,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서울: 아카넷, 2003), p.86.
76) Immanuel Kant,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정초』(서울: 아카넷, 2007), p.148.
77) 박찬구(2006), 앞의 책, pp.120-130 참고.

타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보편주의이다.[78] 이처럼 칸트 의무론의 적극적 보편주의 성격은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적 성향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주의적 성향 속에서 나와 타인의 구분 없는 일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방법

본 항은 군대윤리를 의무론적 시각을 통해 검토한다. 즉, 의무론적 입장이 군대윤리의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되, 의무론적 시각은 앞선 항에서 살펴보았던 의무론의 세 특징인 동기주의, 도덕 지상주의, 보편주의의 틀을 사용한다.

가. 동기주의

칸트가 강조하는 동기주의의 핵심은 행위의 선함의 기준이 결과가 아닌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의 예측불가능성과 동기의 통제 가능성[79]에서 기인한다.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동기주의는 전쟁윤리의 제 요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앞선 2장 1절에서 제시한 전쟁윤리의 원칙 중 특히 '전쟁의 도덕성(morality of war, jus ad bellum)'은 의무론의 동기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당한 명분(just cause)과 합법적 권위(right authority), 올바른 의도(right intent)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당한 명분이란 개전(開戰)을 위한 합당한 사유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부당한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전쟁, 이전의 부당한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권리를

78) 여기서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공리주의가 '행복을 사회적인 수준으로 확장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계몽적 성격을 갖는 반면 의무론은 보편적 도덕법칙이 그 자체로 최고의 법칙이므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79) 동기의 통제 가능성은 개인 내면의 동기를 자신이 인지하고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시킬 수는 있지만 이처럼 정당화를 하는 행위 자체도 동기의 통제 가능성, 혹은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되찾기 위한 전쟁, 다른 국가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전쟁 등이 포함된다.[80] 이처럼 전쟁에 있어서 정당한 명분을 강조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시작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합법적 권위는 전쟁의 선포 및 교전 수행의 주체를 공인된 정부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법 점거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제 집단의 폭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전쟁 수행의 주체가 합법적 권위를 갖추어야 함은 전쟁이 개인적인 사상이나 사사로운 이익 등에 의해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결국 전항의 정당한 명분을 갖춘 전쟁만을 허용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의도는 전쟁이 의(義, right)를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되어야 함[81]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와 동기의 중요함과 동시에 그 의도가 정의로운 것이어야 함을 직접적으로 강조한다.

한편, 전쟁의 도덕성 항목 중, 동기주의와 대비되는 결과주의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확실한 성공 가능성'이다. 이 규칙은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전쟁을 개시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겉으로는 '승리'라고 하는 결과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실제적 의미는 승·패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의 중요함'을 강조한 결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나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전쟁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도덕 지상주의

칸트 의무론의 도덕 지상주의, 혹은 엄숙주의는 선을 행함에 있어 그 행위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도덕적 행동을 이행하는 것은 가언명법(假言命

80) 이종원, 앞의 글, p.157.
81) Douglas P. Lackey, "Just War Theory" Larry May, *Applied Ethic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4), p.203 재인용.

法)의 형태를 취할 수 없고, 오로지 정언명법(定言命法)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덕 지상주의, 혹은 엄숙주의는 군직에 대한 인식 중, 소명의식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대적 가치라 여겨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반해 군인이라는 직업은 필요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겠다는 희생정신이 가장 기본이 되며, 이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진정한 군직의 모습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통해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려는 수단적 모습이 아니라 군직 그 자체를 존엄히 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참된 군인에게는 자신의 성과나 공에 대하여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였을 뿐.”이라는 대답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진급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나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는 ‘나는 이 일이 즐겁기 때문에’라는 다른 목적이 전제되는 순간 군인의 직업은 그 자체로 목적적인 것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만약 군직이 최고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수단이 된다면 군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상위의 목적에 위배되는 순간 군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진급을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진급에서 낙마하고 이제 진급의 기회가 없게 되면 자신의 소임을 다할 이유가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유로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 현재보다 더욱 안정되고 많은 보수를 주는 집단이 있을 경우 현 위치를 고수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즐거움을 위해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군직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더욱 큰 문제는 군인의 최후의 소명인 생명의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만약 군직이 스스로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경우 그 상위의 목적보다 더욱 소중한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행동이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어떤 가치로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유일한 가치

이기 때문이다. 결국,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필요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다는 것은 군직을 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하나의 각오이자 결단인 셈이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을 유지함에 따르는 진급의 기쁨과 경제적 안정감, 또는 직업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과 즐거움, 또는 만족감 등의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것들은 묵묵히 직업적 소명을 다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도 이와 같은 논리로 도덕적 행동에 뒤따르는 행복을 부정하거나 그릇된 것이라 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도덕법칙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의무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82] 결국 중요한 것은 군직을 하나의 소명이자 절대적인 목적의 개념으로 보느냐, 다양한 사회의 직업 중 하나의 직업으로 보느냐의 문제이지 군직을 통한 행복의 감정을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다. 보편주의

칸트 의무론의 보편주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근본으로 나와 타자의 구별 없는 도덕법칙 준수를 강조한다. 즉, 내가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내가 추후에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칸트의 보편주의 정신은 앞서 살펴 본 군대윤리의 세 분야(즉, 전쟁윤리, 군인의 공적 도덕성, 군인의 사적 도덕성)에 고르게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우선, 전쟁윤리의 측면에서 보편주의는 '전쟁에서의 도덕성(morality in war, jus in bello)'을 구성하는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중의 정의의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의 무력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이고, 다른 하

82) 박찬구(2006), 앞의 책, pp.141-143 참고.

나는 민간인과 비전투원 또는 병원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차별성(discrimination)이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가 폭력성과 고통, 인간 존엄성에 대한 파괴 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비례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타자 간의 우월성을 전제하지 않는 보편주의 정신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언젠가는 공격을 받는 피해국의 위치가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조국의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에 최악의 상황인 전쟁 속에서도 최소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 상황에서 보편주의가 아닌 자기 우월성이 크게 발현된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군의 유태인 학살이나 베트남전 당시의 양민학살과 같은 무자비한 행태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의 공적 도덕성 측면에서 보편주의는 군인의 몰인격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즉, 군대라는 집단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권위주의적 위계구조를 가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계급의 존엄성을 강조하며[83] 다분히 관료제적 성향[84]을 보이는데, 이 속에서 개인은 사라지고 계급과 명령, 기계적 관계만이 남는 몰인격적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계급을 달리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 이전에 군인 개개인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상대방을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상대방을 단순히 낮은 계급을 가진 하급자, 혹은 업무를 위해 특정 역할을 하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군대의 구조적 특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몰인격의 상황은 나와 타인의 같음을 인정하고,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존중하는 보편주의 정신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인의 사적 도덕성 측면에서 보편주의는 군복입은 민주시민

83) 조승옥 외, 앞의 책, pp.85-89 참고.
84) 민진,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 53권 3호, 2010, p.119.

으로서 사회 속에서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군인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 즉,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나(또는 나의 집단)에 대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여당과 야당은 상생의 방안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애쓰고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은 서로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한다. 지역 공동체는 자신의 마을에 수익이 되는 사업이 유치되거나 불리한 사업이 철회되도록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모습을 확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타자의 동질성과 보편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가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사회 구성원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직업, 환경을 가진 타자들이 모여 서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힘 역시 보편주의에서 출발한다.

3)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방법의 의의와 한계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의 의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전쟁과 폭력에 대한 칸트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의무론이나 도덕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폭력적 성향으로 가득찬 전쟁을 용납한다는 것이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저서는 『영구평화론』이다. 여기에서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지켜져야 할 조건들을 명시하며 상비군과 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 상비군(miles perpetuus)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 나아가, 사람을 죽이도록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고용된다는 것은 인간을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손에 놀아나는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85]

> 양측 모두를 파괴하고 일체의 정의마저 파괴할 수 있는 섬멸전(bellum internecinum)은 영구 평화를 한낱 인류의 거대한 묘지 속에서나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쟁과 그것으로 이끄는 모든 수단의 강구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한다.[86]

하지만, 위의 표현만으로 칸트가 순수한 평화주의자였다거나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입장을 표명한 학자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위의 두 논거의 핵심이 '상비군을 폐지하라.' 또는 '전쟁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라기 보다는 상비군이 존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비 경쟁'과 일체의 정의마저 파괴할 수 있는 '섬멸전'을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비군의 논의에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국민들이 외적에 대항할 자구책의 일환으로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다르다.[87]

섬멸전의 논의에 앞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percussores)나 독살자(venefici)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perduellio)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짓은 비열한 전략이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적의 성품에 대한 어떤 신뢰가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하한 평화도 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적대 행위는 초토화 섬멸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88]

---

85) Immanuel Kant, 이한구 역, 『영구평화론』(파주: 서광사, 2008), p.17.
86) 위의 책, p.20.
87) 위의 책, p.17.
88) 위의 책, pp.19-20.

나아가, 『판단력 비판』에서는 자연에 빗대어 '숭고'를 논하는 도중에 정치가보다 장군이 존경의 대상이 되며, 전쟁조차도 숭고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정치가와 장군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월등한 존경을 받아 마땅한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성적 판단은 후자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심지어 전쟁조차, 만일 그것이 질서 있게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신성시하면서 수행된다면, 그 자체로 어떤 숭고한 것을 가진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민이 보다 많은 위험에 처했었고 그런 위험을 용감하게 견디어 낼 수 있었다면, 그럴수록 전쟁은 그 국민의 신념을 그만큼 더 숭고하게 만든다. 반대로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는 단지 상인 기질만을, 그리고 아울러 천박한 이기심, 비겁과 나태함을 만연시켜 국민의 신념을 저열하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89]

따라서 칸트를 절대적 평화주의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칸트는 전쟁이 지닌 문화적 평형을 보았다. 즉, 불화(不和)를 통해 많은 악(惡)이 생겨나지만 그 악을 통해 항상 '새로운 힘의 긴장'이 드러나고, 그로부터 다시 많은 선(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90] 또한 전쟁이 "질서 있게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신성시하면서 수행된다면" 그 자체에서 숭고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쟁에 관해 존중할 만한 것은 바로 합법성의 보장이다.[91] 결국, 칸트가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 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전쟁 자체의 악함이나 전쟁 없는 상태의 추구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보편적 규칙의 준수였다.

이러한 칸트의 의무론은 '지금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득이 되는가, 실

89) Immanuel Kant, 김상현 역, 『판단력비판』(서울: 책세상, 2011), p.111.
90) Volker Gerhardt, 김종기 역,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서울: 백산서당, 2007), p.37.
91) 위의 책, pp.41-42.

이 되는가?'하는 형식의 계산을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칸트와 의무론의 관심은 이익의 계산이 아닌 옳고 그름 자체에 대한 탐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론은 전쟁윤리에 있어서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에서 아무리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라도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으며, 그 제한사항은 유지하는 데 아무리 큰 고충이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행위의 제한사항은 필요 이상의 살생을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비례성의 원칙과 무장하지 않은 포로나 민간인들을 살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차별성의 원칙을 포함한다.

또한, 의무론은 공리주의가 쉽게 주장하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주문한다. 결과주의에서처럼 단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92] 왜냐하면 행위의 결과는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안전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의해 얼마든지 합리화 되어 변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화된 결과에 의해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수단화한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한편,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그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교수가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93]의 경우나 폭탄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를 고

92) 박균열 외, 앞의 책, pp.242-243 참고.

93) 미 해군 특수부대 실(SEAL) 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임무 수행 중 만난 염소치기를 살려 주었다가 염소치기가 아프가니스탄 군에 군인의 위치를 알려주어 요원 4명 중 3명이 사살당한 실화이다. 이후 살아남은 루트렐 하사는 "내 평생 가장 어리석고, 가장 덜떨어진 결정이었다. ... 사형집행을 승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쪽에 표를 던졌다. .. 적어도 지금 그 순간을 돌아보면 그렇다. ... 그 결정적인 표는 내가 던졌고, 그 일은 이스트텍사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회상하였다.

문해야 하는가의 문제[94]와 같이 부하(또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가치와 무고한 시민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가 서로 부딪힐 경우 의무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한 명의 건강한 신체를 이용해 다수의 불편한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 가상적 상황이 아닌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며,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의무론의 출발점에 대한 오인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의무론은 개별 문제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 아니라 그 상위에서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옳은 규칙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한 이론이다. 또한, 의무론이 표방하는 세 원칙 중 동기주의를 택함은 곧 선한 동기를 통한 행위의 결과가 그릇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으므로, 옳은 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개별 상황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의무론에 있어서 차후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다만, 의무론을 행함으로써 뒤따르는 부작용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강구될 수 있으며[95],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벗어나지만 절대적으로 급박하고 필요한 군사작전의 경우 책임윤리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군대윤리에 대한 책임윤리의 의미는 4-2장(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의와 한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군대윤리에 대한 또 다른 한계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내용이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공리주의의 강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공리주의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기반을 두어 거부감이 들지 않는 반면,

---

더욱 자세한 내용은 Michael J. Sandel,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파주: 김영사, 2010), pp.40-43 참고.

94) 만약 그 사람이 폭탄을 숨겨둔 것이 확실한 경우 폭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테러리스트가 맞느냐, 혹은 그가 폭탄의 위치를 아는가?' 라는 질문에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고한 사람을 고문한다던가 고문의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우려가 있다.

95) 예를 들어 염소치기는 포로로 잡아둔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임무 종료시까지 감금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키는 방법을 통해 상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의 범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과학적, 심리학적 방안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의무론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을 강조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특히,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며, 분별 있는 이성능력이 상당부분 제한되는 전장 상황에서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는 의무론은 그저 형식적일 뿐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을 두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편하고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편하고 익숙한 것, 혹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사실의 문제이지 '바람직한' 당위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인간의 행복을 원하는 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의무론보다 공리주의 이론이 더 낫다는 결론은 자연주의의 오류(the naturalistic fallacy)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선한 행위의 근거를 '내가 남에게 대우받고자 바라는 방식'이라 규정한다면[96] 대부분의 선한 행위는 불편함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맛있는 음식을 내가 다 먹고 싶지만 주위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하고,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는 나의 피곤함을 감수해야 하며,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의 일반적인 원칙과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에서 옳은 행위는 나에게 편한 것, 우리 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여기에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느냐는 개인의 역량이자 부대원의 역량이겠지만, 나에게 더욱 편한 결정을 내리며 '이것이 좋은 것이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이자 스스로를 속이는 결정일 뿐이다.

96) 물론, 이러한 방식이 칸트가 말한 보편주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칸트의 입을 통해 칸트를 정당화하는' 순환논증의 오류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한다." 는 명제는 단지 칸트의 도덕법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황금률이나 유교의 충서(忠恕)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인류 행동법칙의 공통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덕윤리적 접근

1) 덕윤리의 개념

윤리학의 여러 형태 중에서 규범윤리학에 초점을 맞출 때 이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 원리 등을 밝혀 제시하는 한편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지니고 있어야 할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윤리학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 바, 전자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의무 또는 규칙 중심의 윤리학(deontological or principle ethics)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중시하는 입장을 우리는 덕 중심의 윤리학(virtue ethics)이라고 부를 수 있다.[97] 즉, 앞에서 살펴보았던 공리주의나 의무론이 도덕적 삶을 위한 방향과 원리, 또는 규칙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덕윤리는 도덕적인 사람의 능력과 자질 등에 초점을 맞춘 윤리학적 이론이다. 현대적 의미의 덕윤리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앤스콤(Elizabeth Anscombe)은 앞으로의 윤리학이 의무나 규칙이 무엇인지를 궁리하는 일을 그만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으로 돌아가 어떤 종류의 인간 또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며,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해 어떤 덕들을 지녀야 하는지를 탐구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덕윤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98] 이처럼 앤스콤을 포함한 덕윤리학자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개인이 아무리 많은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고상하며 원대한 도덕적 규칙을 알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그 사람의 도덕적 행동이나 품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며, 오히려 개인의 유덕한 성품이 개인의 도덕적 행동과 사회적 도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의무 중심의 윤리와 덕 중심의 윤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

97) 도성달 외, 『윤리학과 덕교육』(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85-86.
98) 위의 책, p.89 참고.

<표-3> 의무의 윤리와 덕의 윤리 비교[99]

의무의 윤리(morality of duty)	덕의 윤리(morality of virtue)
의무주의(deontology) → 비결과주의 윤리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 공리주의	목적주의적(teleological) → Aristotelian 비목적주의적(non-teleological) → non-aristotelian
행위 중심적(action-centered) → 개별행위 중시	행위자 중심적(agent-centered) → 성품, 존재 중시(traits of character, being)
규칙 중심적(rule-oriented) → 도덕은 규칙의 체계	덕목 중심적(virtue-oriented) → 규칙화된 한계 인지
의무 중심적(duty-centered) → 최소 윤리관(minimum morality)	의무+의무 이상의 행위(duty + α) → 최대윤리관(maximum morality)
정당화 중시 > 동기화 보조 (justification > motivation) → 도덕인식론, 규범윤리로 발달	동기화 중시 > 정당화 보조 (motivation > justification) → 수양론, 도덕교육론 발달
도덕적 사고 교육(moral thinking) →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 모형이용	덕성 함양 교육(cultivation, inculcation of virtues) → 수양론 중시(지적 각성, 의지 단련, 감정 조율)

덕윤리학이 기존 윤리학의 의무나 규칙 등을 거부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덕윤리는 공리주의(결과주의, 행복주의, 보편주의)나 의무론(동기주의, 도덕 지상주의, 보편주의)에서 보았던 형식의 행위의 원칙들은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덕윤리학의 핵심적인 특징을 찾아보자면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덕윤리학은 무엇보다도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도덕적 성품이란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도덕적 행위를 하려는 성향 내지는 태도를 말한다. 둘째, 덕윤리학은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99) 황경식,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서울: 아카넷, 2012), p.433.

이끌어내는 몇 가지 도덕적 원리만을 강조하는 윤리학적 이론의 역할을 부정한다. 덕윤리학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행동을 위한 '판단'이란 보편적 도덕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일종의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100]

덕윤리의 첫째 특징인 개인의 행동이 아닌 성품에 집중한다는 것은 덕윤리학이 근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모델에서 출발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 그것은 정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며 오직 성품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품성이란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 뛰어나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서, 인간을 선하게 하며 그 자신의 일을 잘하게 하는 성향 내지 성품을 뜻한다.[101] 따라서, 덕윤리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한 '그'가 어떠한가?"이다. 덕윤리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유덕한 성품은 용기나 관대함, 정직, 충실함 등이다. 둘째 특징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실천적 지혜를 탐구한다는 것은 덕윤리의 등장 배경이기도 한 규칙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즉, 기존의 규칙 윤리학이 행위가 타당한 규칙들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무엇이 의무이고(obligatory) 무엇이 허용될 수 있고(permissible) 무엇이 옳고 그른지(right or wrong)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덕윤리학은 무엇이 훌륭하고(noble) 무엇이 칭찬할 만하고(admirable) 무엇이 좋고 나쁜지(good or bad)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102] 이처럼 덕윤리가 개별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규칙을 세우고 다양한 규칙을 만들더라도 모든 인간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결국 모든 개별 상황에 접목시킬 수 없는 규칙이라면 개인들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좋고 나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세가 더욱 악화될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나 칼을 들고 도망자를 찾는 악당에게 도망자의 위치를

100)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교육과학사, 2006), p.195 참고.
101) 위의 책, p.199 참고.
102) 박찬구(2006), 앞의 책, pp.148-149.

거짓 없이 알려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와 같이, 구체적 규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개별 상황에 맞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필요함을 덕윤리는 강조한다.

2)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방법

가. 개인의 유덕한 성품

덕윤리는 그 '행동'이 옳거나 그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에 대하여 공리주의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통해 옳은 행동이라 규정할 것이고, 의무론은 힘든 타인을 돕는 선한 동기를 통해 도덕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덕윤리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집중한다. 이러한 덕윤리의 개인에 대한 집중, 그리고 개인의 덕성에 대한 관심을 군대윤리의 상황에 접목시켜 보았을 때 군인의 사적 도덕성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덕윤리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거대한 세계의 윤리의 추상성과 실천력 부재를 과거 중간규모(meso-cosmos) 세계의 윤리가 지니고 있었던 실천적 성격을 되살림으로써 극복해 보려는 시도[103]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다루는 전쟁의 상황이나 대규모의 군을 통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중심사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군인의 사적 도덕성을 군인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한 도덕성임을 감안할 때, 덕윤리는 이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소규모 또는 중간규모 단위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살아가며,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의 모습은 분명 덕스러운 개인의 품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덕윤리가 지향하는 개인의 유덕한

103) 박찬구(2006), 앞의 책, p.159.

성품인 용기나 관대함, 정직, 충실함 등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가치와 다름이 없다. 군인으로서 덕윤리학이 강조하는 덕스러운 성품을 확충하는 것은 군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나. 구체적 상황에 접목한 실천적 지혜

규칙 중심의 윤리학 분야와 구분되는 덕윤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몇몇 도덕 원칙을 세워두고 그 범주만으로 모든 도덕법칙을 설명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덕윤리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각양각색의 상황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작업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세밀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덕윤리의 상황 중심 성격은 지휘관(leader)을 중심으로 한 부대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부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나 전쟁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규정 적용이나 상급 부대로부터의 중앙집권적 명령보다 경험 많고 구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 친구와의 문제로 방황하는 병(兵)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간부의 문제, 혹은 전시 아군의 위치를 확인한 적국 민간인에 대한 대처방안과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법과 규정, 혹은 규칙의 준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일부는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문제를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처럼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평시의 군 인사법이나 군인 복무규율과 같은 규범 혹은 전시 교전규칙이나 전쟁법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기본적인 규칙들이 무너지게 되면 원칙 없는 부대 운영에 군 기강은 헤이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군 임무 수행에 있어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인정하되, 해당

지휘관은 기본적 규칙·규범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결국, 덕윤리의 구체적 상황에 접목한 실천적 지혜는 큰 틀의 합의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자유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방법의 의의와 한계

현대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고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각종 규정과 규칙, 순서와 질서를 만들었다. 학생이라면 학교 등교시간이 있고 직장인은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버스를 타면 나이에 맞게 요금을 낸다. 버스는 파란 불에 출발하고 빨간 불에 멈춰서며 속도를 어기면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규정과 규칙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처럼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순서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람, 또는 훌륭한 개인을 만드는 전부인가?'라는 질문에는 쉽사리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윤리학자들은 훌륭하고 선하며 따름직한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의 차이는 규칙이나 규정의 준수가 아닌 덕스러운 성품을 지녔느냐 여부이며, 이러한 개인의 유덕한 성품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라 주장한다. 따라서 덕윤리학자는 도덕적 행동을 위한 일련의 이론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덕스러운 그가 어떻게 모습을 보였는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 성품은 무엇인지,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한다. 예를 들어, 일본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고

(故) 이수현씨나 제 2차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의 아사감방(餓死監房)에 자처하여 들어간 막시밀리안 콜베(Maximilien Kolbe) 신부[104]의 경우, 그들의 행동은 사회의 규정이나 규칙을 넘어선 고귀한 덕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비록 한 개인의 행동과 목숨이었지만 이들의 용감한 행동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현대 덕윤리의 등장배경과 그 의미는 군대 상황에 적용해도 크게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현대의 군 역시 사회의 크기에 비례하여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등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전우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 등은 규정과 규칙의 준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덕윤리는 '군인으로서의 유덕한 성품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는 덕 있는 군인의 표상은 어떤 모습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덕성을 기르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덕윤리의 특징은 지휘관의 리더십이나 인성교육 방안, 또는 부대원의 정훈교육의 주요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이론과 규칙 중심의 교육에 좋은 덕성, 훌륭한 인품 등에 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군대윤리를 더욱 충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덕윤리의 군대윤리 교육적 함의는 5장에서 더욱 자세히 논하겠다.

한편, 덕윤리가 보이는 구체적 상황 중심의 윤리는 분명한 강점을 가지지만 그 속에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상황 중심의 윤리는 어떤 특수한 여건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서 특수한 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은 다분히 상대주의적일

104)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던 아우슈비츠 감옥에는 포로 한 명이 도망치면 같은 감방에 있던 20명을 아사형(餓死刑)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다. 콜베신부가 있었던 14호 감방에서 한 명의 포로가 도망쳤고, 아사형에 처할 인원을 뽑는 시간이 다가왔다. 콜베 신부는 자신이 지목되지 않았음에도 부인과 아이가 있는 프란치스코 가조니프체크 중사를 대신해 본인이 아사감방에 들어가겠다고 자청했다. 콜베 신부의 용기있고 대범한 행동에 맹수의 우리와 같았던 아사감방은 열심한 성당으로 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Maria Winowska, 김동소 역, 『막시밀리안 콜베』(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pp.193-208 참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윤리적 상대주의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점을 오늘날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도덕적 혼란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105] 만약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이는 곧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로 빠질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덕윤리 역시도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규칙을 가진 상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상황의 특수성이나 예외의 인정을 요구할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5)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 앞의 책, p.127.

Ⅳ. 현대 군대윤리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윤리학적 검토

이 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군대윤리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구체적인 논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 이론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치와 비교하여 군에서 강조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 그러한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이론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주요 윤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군대윤리의 제 요소(전쟁윤리, 군인의 공적 도덕성, 군인의 사적 도덕성)에 적합한 이론과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론, 그리고 부적합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른 한 가지는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로, 군인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히는 '명령에 대한 복종'이 왜 중요하며, 한계는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명령과 복종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1.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 이론 검토

1) 현대 사회의 가치와 군의 특수성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원이 물질적·경제적 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고, 어떤 이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구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기의 첫 돌잡이 물건도 현금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106]도 나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군 사회도

물질적, 감각적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가 많이 늘었다. 신세대 장병들은 막연한 미래보다 현실을,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희생보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생활을 선호하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타인과 국가마저도 실사구시의 도구적 차원으로 인식하여 어떤 값어치로 환산하려는 경향이 생겼으며,[107] '탈권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보고 느끼는 '감성적 성향'이 강하며 동시에 '합리주의적 성향'도 강하다.[108] 이처럼 사회가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적 성향에 대하여 군대라는 집단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가? 군도 사회 속의 집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혹은 군은 사회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것들과는 별개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군의 핵심 가치는 군 조직의 특징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조직문화를 결정하는 요소가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유가치이며, 그 공유가치는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이유에서 연역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군 조직구조의 특징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군대는 전쟁수행과 더불어 전쟁에서의 필승이라는 절대적 목적을 추구한다. 둘째, 전쟁 수행을 위해 군 조직은 다양한 군종과 병과 등으로 구성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승리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통일된 가치체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복합성과 집단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셋째, 전투라는 임무 수행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넷째 군 조직 구성원을 조직 목표에 통합하는 데 가

---

106) 경향신문, 2008. 4.22. "아기 돌잔치, 선물도 현금, 돌잡이도 현금이 최고"
- 여성 포털 사이트 이지데이(www.ezday.co.kr) 주관으로 2008. 3.28~4.16.까지 3,102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돌잔치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아기가 돌잡이로 잡았으면 하는 것으로 '현금'이 54%(1,684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참여자의 72%(2,238명)가 돌잔치 초대 선물로 현금을 준비한다고 답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221730152&code=920100

107) 남봉균, "21세기 군인의 가치관 정립방향",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 43권, 2005, pp.126-134 참고.

108) 제정관, "장병 정신전력과 신세대 가치관", 한국군사학회,『군사논단』, 제 39권, 2004, p.80.

장 효과적인 수단을 추구한 결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전쟁 수행이 악의적이거나 무의미한 폭력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친 지도자의 국익과 관련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군대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109] 위의 다섯 가지 군대 조직 구조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첫째와 둘째는 '전쟁'이라는 군대가 가진 기능적 특성을 이야기 한 것이고, 셋째와 넷째는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가지는 조직의 특성인 강제성과 위계질서를 이야기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의 네 특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군대는 도덕적 가치가 조직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이고,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조직의 핵심적 기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군이 무력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라 볼 수 있다. 면허가 없이 환자를 보는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대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강요할 수 있듯, 군인도 도덕성 없이는 올바르게 무력을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군은 일반사회가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되고, 오로지 도덕성에 근거한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사회의 가치들은 하나같이 나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반해, 군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자기이익 창출과 자기희생의 전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며 자기헌신은 결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희생은 오직 '명예', 그 밖의 것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군이 사회를 따라 변화하되 결코 변화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군이 자기희생이라는 특수성을 포기할 때 그것은 군의 붕괴를 의미할 것이며 그럴 경우 사회, 나아가 국가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110] 만약 그럼에

109) 김진만・박균열, 앞의 책, pp.274-275.

도 불구하고 군과 사회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군의 핵심 가치인 희생의 도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화가 될 것이다. 즉, 군이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군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며,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 군의 핵심적 가치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오히려 군이 도덕성을 비롯한 핵심 가치를 순수한 형태로 간직하고 있을 때, 사회가 군의 가치를 본받아 사회적 도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2)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적 이론의 타당성 검토

앞선 항에서 군이 세속적 가치가 아닌 도덕성의 가치이자 희생의 가치를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본 항에서는 군대윤리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도덕성의 모습을 검토한다. 이 때, 구체적인 도덕성의 모습은 3장에서 정당화 작업을 시도한 윤리학 이론인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를 사용하며, 각각의 이론이 군대윤리의 세 분야인 전쟁윤리, 군인의 공적 도덕성, 군인의 사적 도덕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군대윤리의 영역에 중심이 되는 윤리학적 이론과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론, 그리고 부적합한 윤리 이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각 군대윤리 영역에 대한 윤리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한 내용이다.

<표-4>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 이론별 적용 가능성

구 분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전쟁윤리	×	○	△
군인의 공적 도덕성	△	○	△
군인의 사적 도덕성	△	△	○

범례 ○ : 중심적 이론　△ : 보완적 이론　× : 부적합 이론

110) 이민수, 앞의 책, pp.31-37 참고.

가. 전쟁윤리

우선, 전쟁윤리의 경우 의무론이 중심적 이론, 덕윤리가 보완적 이론이 될 수 있으며, 공리주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쟁윤리에 대하여 의무론적 윤리 이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쟁 상황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즉, 전쟁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 비윤리적이라 판단되는 폭력과 고통, 그리고 살인 등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의무론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전쟁의 비윤리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론의 동기주의가 '전쟁 전의 정의의 규칙(jus ad bellum)' 중 정당한 명분, 합법적 권위, 올바른 의도 항목의 핵심과 맞닿아 전쟁 발발을 최소화하는 근본정신이 되고, 보편주의는 '전쟁 중의 정의의 규칙(jus in bello)'의 비례성과 차별성을 정당화 해주는 핵심 개념으로, 전쟁에서의 폭력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덕윤리가 전쟁윤리에서 의무론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지휘관의 덕성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규칙의 준수를 강요하거나 중앙집권적 명령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험 많고 구체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처럼 덕윤리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전쟁윤리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전시 교전규칙이나 전쟁법과 같은 전쟁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 없이 지휘관의 도덕적 재량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전쟁윤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공리주의의 결과주의와 행복주의가 결과(성과)를 중시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전쟁 상황에서의 군인의 현실적 모습을 잘 대변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군이 결과주의와 행복주의적 성향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을 통해 당위를 이끌어내는 자연주의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리주의가 전쟁윤리에

부적합한 더욱 궁극적인 이유는 공리주의가 가진 행복주의 성향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의 증진을 전제로 한 윤리학적 이론이다. 물론, 이를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사회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공리주의의 설명은 아직 납득할 만큼 완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리주의가 전쟁윤리의 이론으로 적용될 경우 전쟁윤리의 주요 질문은 '어떻게 전쟁을 줄이고, 전쟁을 하는 동안 폭력성을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이득이 무엇이고, 가장 저렴하게, 아군의 적은 인명피해로 전쟁을 수행할 방법은 무엇일까?'가 될 것인데, 이는 전쟁의 폭력성을 높이기만 할 뿐이다. 결국, 전쟁윤리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근거로 한 의무론을 중심으로 전쟁에 대한 폭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덕윤리가 가진 강점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접근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 성격의 특성상 전쟁윤리의 담론에서 지양되어야 할 이론이라 볼 수 있다.

나. 군인의 공적 도덕성

군인의 공적 도덕성 측면에서는 의무론을 중심적 개념으로 두고, 공리주의와 덕윤리가 함께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군인의 공적 도덕성은 평상시 부대를 운영하고, 군사력을 유지·보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무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군인정신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적 도덕성에서 의무론을 중심에 둔 것은 의무론의 도덕 지상주의 특징이 군인의 공적 도덕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도덕 지상주의는 도덕적 행동을 이행하는 데 도덕적 행동 이외의 다른 목적을 허용하지 않는 정언명법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군인의 소명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구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신의 생명을 과감하게 내어놓는 희생정신을 결단하는 것은 군직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군직의 소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사리사욕 따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군직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군직에 따르는 진급이나 경제적 안정감, 또는 직업 자체의 만족감 등은 군직에 충실했을 때 뒤따르는 것이어야 할 뿐, 군직을 수행하는 우선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공리주의는 그 출발점이 입법이나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군대를 운영하기 위한 각급 법률이나 규율, 규범, 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제정하기에 공리주의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군 인력을 확충하고, 부대의 운영과 부대원의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적정 휴가일수는 얼마이며, 어떠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이 향후 국방력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공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덕윤리의 개인의 유덕한 성품을 강조하고, 구체적 상황 중심의 실천적 지혜를 중시하는 특성은 다소 경직된 군 조직에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부하 병사가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업무상 실수를 하였을 때, 그 내용이 고의적이지 않고, 과실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규정에 입각한 처벌보다는 지휘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재량으로 과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덕 있는 지휘관의 모습이나 상황에 입각한 배려가 엄격한 처벌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업무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덕윤리나 상황을 고려한 윤리는 반드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나친 상황 중심의 윤리는 자칫 규칙과 규정의 무력화를 통한 혼란상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군인의 사적 도덕성

군인의 사적 도덕성에 있어서는 덕윤리가 중심적 개념으로,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군인의 사적 도덕성은 평상시 군인이 부대 밖의 일상생활에서 유지해야 하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으로,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을 의미한다. 즉, 군인은 자신의 공적인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더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군직은 도덕적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일반 시민의 인식과 군인 스스로의 의식에서 나온다. 군인의 사적 도덕성에 있어서 덕윤리가 중심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은 덕윤리의 구체적 상황 중심의 특성 때문이다. 즉, 일반 사회에서의 생활은 부대 내의 생활에 비해 행동에 따르는 규칙이나 규정이 적은 반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어떤 행동이 바람직하며, 어떤 행동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개인과 개인 간,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위에서 도움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군인은 기꺼이 그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군인으로서 사회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군인이 가져야 하는 사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의 측면에서 가능한 범위의 베품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선한 방법을 통해 공공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민주시민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군인이자 민주시민으로서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동,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을 뿐 아니라 군인의 도덕성 측면에서도 추구할 만한 행동이다. 예를 들어, 휴일에 각종 단체를 통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 또는 학교에서 군인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행동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군인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 종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현대 군에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은 의무론을 중심으로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강점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선한 동기,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모든 인간을 보편적이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특징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인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필수적인 윤리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군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도덕성은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덕윤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공리주의는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율의 제정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물질 중심적이고 개인의 이익과 쾌락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군인은 도덕적 가치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하고, 그 도덕적 가치는 의무론을 중심으로 덕윤리와 공리주의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의와 한계

1) 군에서의 명령과 복종의 의미

군에서 명령과 복종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의 존재 목적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군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어떤 직업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그 직업이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직업의 존재이유를 없앨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직업, 또는 집단의 존재 목적은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이는 의사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갖는 기능적 특성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는 사실과, '질병이

없는 사회'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의 존재자체가 부정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군, 또는 군인은 전쟁을 준비하고,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즉, 다른 어떤 직업도 대신할 수 없는 군만의 특수한 기능이 바로 '전쟁의 수행'이고, 만약 전쟁이나 국가 간의 분쟁이 없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라면 군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 무력의 관리를 통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유사시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의 맡은바 임무이자 존재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이는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야 될 만큼 확고부동한 목표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력의 사용이 정당화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군대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기, 곧 군대의 기강(紀綱, discipline)이 생명처럼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군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111] 또한 군의 엄격한 명령과 복종의 위계구조는 군 고유의 임무와 기능의 특성을 효율적·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어떠한 작전이나 계획도 세우기 어렵고, 군대의 기능 자체도 마비되고 말 것이다.[1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헌팅턴은 "군인이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이유 없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그 명령을 대체할 수 없으며 즉각 그 명령에 복종한다. 군인은 자신이 이행하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책을 실행하는 속도와 능률에 의해서 평가된다. 군인의 목표는 복종이라는 수단을 완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113]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군에서의 명령과 복종의 중요성은 군의 특수한 임무뿐만 아니라 군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군대조직은 지휘통일의 원칙이 강조되며, 강력한 위계구조를 갖는 조직으로서, 의사결정 구조가 중앙집

111)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 앞의 책, pp.130-131.
112) 조승옥 외, 앞의 책, pp.95-96.
113)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앞의 책, p.96.

권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군의 의사결정 구조는 정부조직, 기업조직보다 더욱 중앙집권적이며,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군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군대에서는 단순한 리드(lead)나 관리(manage)보다는 지휘(command)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며, 부대장들에게는 리더(leader)라는 용어보다 지휘관(comman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14] 이처럼 중앙집권화되고, 지휘계통이 일원화된 군의 구조적 모습은 다시 앞서 살펴본 군의 임무의 특수성과 연결된다. 즉,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전쟁 상황에서 빠른 작전의 수행을 위해 지휘계통이 일원화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지휘계통을 유지시켜 주는 핵심적 행위가 명령과 복종 행위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 사회관계와 다르게 군 조직에 있어서는 존속목적과 기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명령, 복종관계의 엄격한 준수(유지)를 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의 방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115] 이처럼 명령과 복종 행위가 군 임무 수행을 위해 중요한 만큼 그 행위의 이행은 규율과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명령과 복종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제 19조 [명령]
>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발령자의 의도와 수명자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 제 22조 [발령자의 책임]
> ①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 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 민진, 앞의 글, pp.100-113 참고.
115) 이만종, “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조선대 군사학연구소, 『군사발전연구』, 제 1권, 2007, p.133.

② 발령자는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령자는 자신이 내린 명령의 실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3조 [복종 및 실행]
①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② 부하는 명령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복무규율에 명시한 명령과 복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군형법」[116]에 의해 아래와 같이 법적 제재를 받는다.

제 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 45조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16) [법률 제11734호, 2013.4.5., 일부개정], 이하 군형법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의 현행 법령을 검색하여 제시하였다.

제 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7조 [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군은 그 조직의 기능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가장 악질적 군사범죄 중 하나로 보고 다른 어떤 일반사회에서의 명령 불이행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117] 즉, 군에서의 명령과 복종은 그 임무 수행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감이나 의무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는 핵심적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

효율적인 '무력의 관리'를 위한 충성과 상명하복, 그리고 위계질서의 확립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군대윤리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성은 언제나 보편적인 윤리의 지평위에 존재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118] 왜냐하면,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명령은 불필요한 폭력과 살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군에서의 모든 명령이 정당한 명령은 아니며, 부당한 명령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구분을 법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에서 구분해 보고자 한다.

117) Nico Keijzer, 조승옥・민경길 편역, 앞의 책, p.47.
118) 윤영돈, 앞의 글, p.78.

우선, 법적 측면에서 정당한 명령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의 조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군인복무규율」의 제 19조에서 명령이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 지시'라 하였으며, 22조에서는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 밖의 사항'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군형법」 제 44조에서는 항명에 해당하는 법적 제재를 기술하며 항명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라 정의하였고, 47조에서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명령 위반이라 규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 모두 명령과 이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조한 것과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명령(또는 지시)의 구속력의 실질적 요건은 명령(또는 지시)이 법질서를 명백히(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국제법의 일반원칙,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등)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하에게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거나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의 명령은 구속력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령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명령이다.[119] 또한,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이를 실행하게 한 자를 교사범이라 정의하면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죄로 처벌한다."[120]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하여 특수교사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엄정한 명령과 충실한 복종을 요구하는 군 조직에서 범죄의 결의가 없는 수명자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였다면 이는 타인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 명령권자에게는 특수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121]

---

119) 하태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그 형사책임", 연세대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12권 4호, 2002, p.8.
120) 형법 제 31조 제 1항.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에 대한 또 다른 판단기준은 도덕적 기준이다. 앞서 법적 기준으로 정당한 명령의 범위와 부당한 명령의 한계를 설정해 두었음에도 다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기준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즉, 직무상 지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떠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부당한 명령이고, 권한 밖의 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법적 기준에서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항목들을 충족시켰음에도 정당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군사작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① 지휘계통상 명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② 적 지휘관을 축출하기 위하여 적국의 병원을 ③ 공중 폭격할 것을 지시한다면 이는 정당한 명령인가, 부당한 명령인가? 물론, 병원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상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 명령은 직무상 관련 있는 상급자의 지시였으며, 명령의 목표는 적 지휘관 제거이고, 합법적 무기체계를 사용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명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격의 대상이 된 적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커서 공격의 성공시에 얻게 될 이익(군사작전상 이익, 경제적 이익 등)이 훨씬 클 경우에는 공격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완벽하게 정당한 명령이라고는 인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거스르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한 명령은 '합법적 명령'이라는 기본적 기준에 더하여 '도덕적 명령'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도덕적 명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집단)의 쾌락, 혹은 이와 유사한 득(得)에 따르거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닌 '보편성'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명령이라 정의내린다. 도덕적 명령의 한 축으로 '보편성'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인간 존엄성'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인간

121) 이만종,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 4권 2호, 2004, pp.652-653.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보편성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명령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칸트 식의 설명을 빌려 전쟁 중의 정당한 명령을 말하자면, '상대방이 나(우리 군, 국민)에게 취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라.', '적국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작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며 적국 국민의 인간성을 존중하라'라는 형식이 될 것이다. 물론, 법적·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후 군사작전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군사적 피해가 적을 수 있는가, 작전 성공률이 높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따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 작전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그러한 이익 등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자국민에 가장 피해가 적은 군사작전의 방법은 적 국민의 완벽한 섬멸이라는 간단하고도 무시무시한 작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을 앞의 병원 폭격의 상황에 대입하여 보면 그 명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 부당한 명령으로 판명된다. 왜냐하면 병원에 대한 폭격은 전쟁과 무관한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작전이며, 병원을 폭격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공격이 허용된다면, 민가에 대한 무차별 폭격도 허용될 것이고, 우리 군의 위치를 알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가치판단이 틀렸음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법적·도덕적 판단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수행이 필요한 급박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군 또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휘관은 도덕적 판단만을 근거로 그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수명자는 개인의 도덕적 소신을 근거로 그 명령을 이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앞의 예를 다시 가져와, 만약 그 지휘관이 병원에 적군의

지휘본부를 차렸으며, 우리 군 및 영토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임박하다는 결정적 첩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정당성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군인의 책임윤리'적 접근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3) 군대윤리적 관점에서의 복종과 그 의의

앞선 두 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전쟁'이라는 군인의 특수한 임무에서 비롯되며, 군대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덕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명령이 다 옳지는 않으며, 법적·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명령만이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하여 수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대답은 결코 쉽지 않다. 헌팅턴은 "군인으로서는 복종해야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불복종해야 한다."[122]라고 대답하기도 했지만 이 대답만으로 간단히 해결하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수의 자국민(또는 타국민이라 하더라도)의 희생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 민간지역을 폭격해야 하는 경우,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도덕적 원리에 따라 폭격을 포기하고 자국민의 대량 희생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지휘관의 모습이라 판단된다. 그렇다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행하라.'는 공리주의적 논리에 따라 민간지역을 폭격한다면 이 논리를 악용하여 더욱 많은 공격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사이에서 연구자는 군인의 책임윤리의식[123]이 필요하다고

122) Samuel P. Huntington, "The Military Mind",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al*(Westview Press, 1979), p.44 재인용.

123) 여기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책임윤리가 베버(M. Weber)나 요나스(Jonas)의 책임윤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즉, 베버가 주장한 책임윤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 전체를 고려해서 어떤 결과의 집합이 최상인지를 고려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하고, 요나스는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연구자가 주장하는 책임윤리의 핵

생각한다. 즉, 군사작전 등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 법적·도덕적 판단이 최우선이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민간인의 희생이 필요한 작전 수행이 필요한 경우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행한 뒤, 작전에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수명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겸허한 마음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희생을 일으키지만 그 대상에 대한 인간 존엄성만은 결코 져버리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침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상대에 대한 존엄성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포기를 각오한다면 그때 비로소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표현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군인의 행동은 책임이자 용기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법적·도덕적 정당성에 더하여 개인의 책임의식을 갖춘 명령은 이제 단순한 상급자의 계급이나 권위에 의한 지시나 의무이행의 촉구 차원을 넘어서 명령권자와 수명자를 포함하는 군인의 도덕성 그 자체가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명령은 명령을 하는 본인과 명령을 받는 수명자, 그리고 명령 행위의 대상 모두를 완벽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명령권자가 수명자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윤리적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수명자에게 전가하고자 할 것이고, 공격의 대상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적·비도덕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법적·도덕적 정당성과 책임의식이 결합된 명령은 복종과의 구분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명령권자 자신도 명령을 하는 입장인 동시에 도덕법칙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심은 본인이 내리는 결정(상급자의 명령 또는 하급자의 수명)의 진정한 의도를 스스로 돌아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의도하는 책임윤리는 '내가 책임을 지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의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베버와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연구자의 책임윤리는 오히려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변순용, 『책임의 윤리학』(서울: 철학과현실사, 2007), pp.46-47, 137;
도성달 등, 『거시윤리학』(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p.36-37, 144-145. 참고

수명자의 입장이 되며, 수명자는 완벽하게 도덕적 법칙에 합치된(도덕법칙에 어긋난 경우 명령권자의 책임의식으로 이를 보완한) 명령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인의 전 마음을 다해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에서의 올바른 명령과 복종은 단순히 군의 기능적 효율을 높이거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군을 도덕적으로 정비하고, 자신의 도덕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급자를 지속적으로 존엄하게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군의 온전한 도덕적 상태를 유지하고 이의 보존을 원한다면 올바른 의미의 명령과 복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의 이행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V. 군대윤리의 교육적 과제

이 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군대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선별하여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의무론을 중심으로 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전자는 군인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군대윤리적 덕목에 일치하는지를 논할 것이고, 후자는 규칙 중심적, 관료제적 성격이 강한 군대 집단에서 덕윤리가 교육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적 정당화를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를 통하여 수행하였음에도 본 장에서 공리주의에 입각한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첫째, 공리주의는 자본주의나 이기주의 등의 이론과 큰 맥락을 같이하여 이미 현대사회와 군에 너무도 친숙한 개념이므로 추가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며, 둘째, 공리주의적 사고에 따른 합리적 판단 등의 이점이 있겠으나 자기 합리화의 위험성이나 군인의 희생 정신을 거부할 우려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형성의 필요성

연구자가 이 절을 통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의무론을 중심으로 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군인으로서 군 복무중 맞닥뜨리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 가운데서 군인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도덕성에 맞는 행위인지, 즉 군

대윤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윤리적 가치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군대는 그 임무 수행을 위해 계급구조와 위계조직이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 강화된 곳으로, 평상시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 두지 않는다면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명령에 대하여 무조건적 복종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로 군인, 특히 장교나 지휘관의 경우 자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크고, 마지막으로 무력을 관리하는 집단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의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의무론을 중심으로 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하되,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124]을 우선 검토한 뒤, 4-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겠다.

1)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

미 육군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명령이라고 생각되는 명령을 상관에게 받았을 때, 상관에게 복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때의 조치, 최후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기까지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 행동절차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하거나, 신중한 판단없이 은밀히 행동하거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며,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명령을 확인하고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상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과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24)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Resolving an Ethical Dilemma Involving a Superior", MQS Ⅱ, Manual of common tasks, for lieutenants and captains* (Washington, DC, 31 January 1991).
- 이하 내용은 조승옥 등, 『군대윤리』(파주: 집문당, 2010), pp.334-336.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다. 단, 내용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표의 방향이나 화살표시, 단어의 긍정/부정어 사용의 경우 이해가 쉽도록 변경하였다.

<표-5>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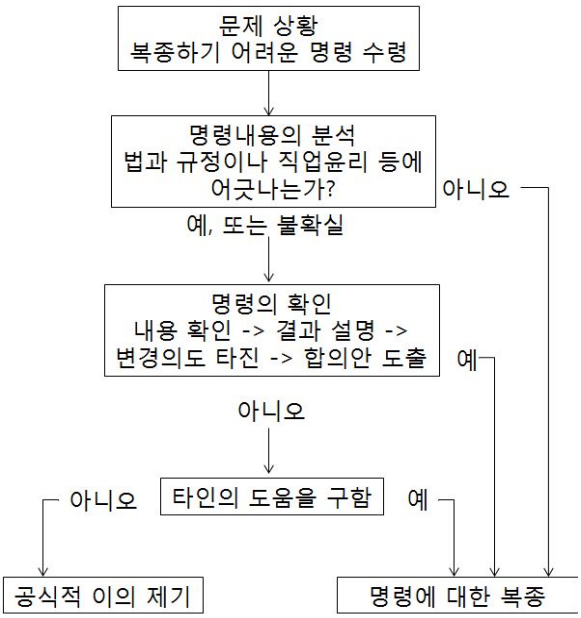

제 1단계 : 문제(problem)

제 1단계는 군인이 상관에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명령이라고 생각되는 명령을 받은 '문제 상황'이다.

제 2단계 : 분석(analysis)

제 2단계는 상관의 명령이 군대의 규정, 군사재판 판례, 또는 군형법, 군 전문직업 윤리와 갈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니오'라면 명령에 복종하고, '예 또는 불확실'이라면 그 명령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 3단계 : 명령을 명확히 함(clarify the order)

제 3단계는 명령을 발한 개인에게 그 명령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는 그 명령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설명', '명령에 따르는 결과 설명', '상관의 명령 변경 의도 확인', '합의안 도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라면 명령에 복종하고, '아니오'라면 타인의 도움을 구한다.

제 4단계 : 남의 도움을 구함(seek assistance from others)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①동료장교 ②군종장교 ③감찰 참모 ④법무 참모 ⑤선임 장교 등이 있다. 이들의 조언을 받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 라면 명령에 복종하고, '아니오' 라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제 5단계 : 공식적 이의 제기(formal complaint)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①지휘계통상 명령을 내린 상관의 상급 지휘관 ②감찰 참모 ③법무 참모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은 ①명령의 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②불법·비도덕적이라 판단되는 명령에 대하여 명령의 발령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③발령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타인에게 도움을 구한 후 공식적 이의를 제기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상된 의사결정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의사결정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①법적·윤리적 측면에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②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에게 명령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곧 공식적 이의 제기를 결정한 후의 방법적 측면일 뿐이고, ③불법적, 비윤리적 명령임을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또는 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2)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이 모델은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이 의무론에 입각한 군대윤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모델이다. 앞선 미 육군의 모델이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인데 반하여 여기서 제시하는 모

델을 '의사결정' 모델이라 명명한 것은 이는 수명자가 명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발령자의 윤리적 결심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6>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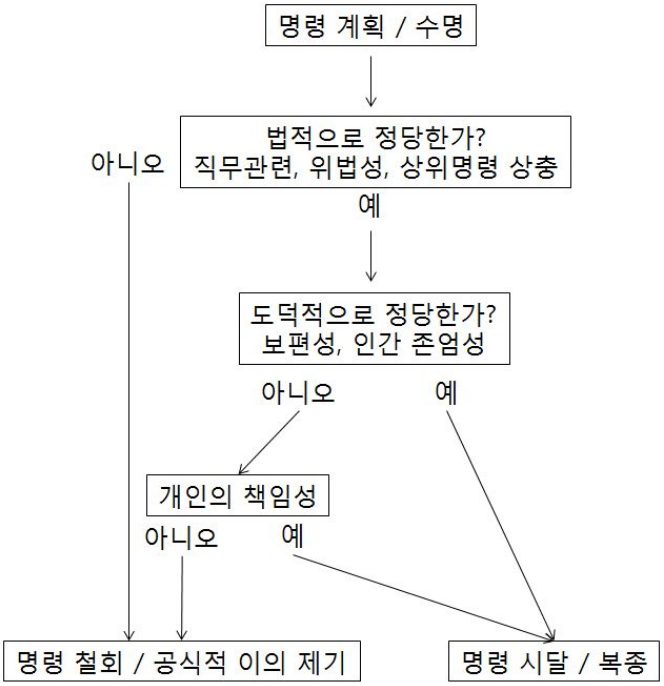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특징은 ①단순히 수명자의 입장뿐 아니라 명령의 발령자의 입장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②법적·도덕적 정당성의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③도덕적 정당성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감행해야만 하는 작전 수행에 대한 책임의 검토를 만들었고, ④법적으로 정당성을 얻지 못한 명령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명령의 철회 또는 공식적 이의 제기를 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 명령의 계획 / 수명

제 1단계는 발령자의 입장에서는 명령을 계획하는 단계이며, 수명자는 명령을 받은 단계이다. 군인은 매 명령을 발하고, 받을 때마다 그 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단계 : 법적 정당성

제 2단계는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함은 직무와 관련되고, 현행 법률상 위법의 소지가 없으며, 상위의 명령과 상충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공금을 횡령하도록 지시받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 등은 법적 정당성을 잃은 명령이다.

‘예’ ☞ 도덕적 정당성 검토

‘아니오’ ☞ 개인의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명령의 철회 또는 공식적 이의제기

제 3단계 : 도덕적 정당성

제 3단계는 명령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는 ‘적국을 포함한 다른 누구도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전투와 무관한 개인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의 질문을 통해 도덕적 정당성을 확인한다.

‘예’ ☞ 명령 시달 / 복종

‘아니오’ ☞ 개인의 책임 가능성 검토

제 4단계 : 개인의 책임성

제 4단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령이지만 아군(또는 자국/타국 국민)의 즉각적이고 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명령을 시달(집행)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개인의 책임성은 도덕적 책임과 함께 명령의 피해에 비례하는 정도의 신체적 책임까지도 포함한다. 명령권자(집행자)의 신체적 책임을 담보로 함은 책임의 엄중성을 위함이다.

‘예’ ☞ 명령 시달 / 복종

‘아니오’ ☞ 명령 철회 / 공식적 이의 제기

제 5단계 : 명령철회 / 공식적 이의 제기 or 명령 시달 / 복종
제 5단계는 발령자가 명령을 철회/시달하거나 수명자가 이의제기/복종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중, 수명자의 이의제기는 명령을 직접 내린 발령자나 차상급자, 또는 지휘계통상 이의제기가 가능한 합법적 위치에 있는 대상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앞선 미 육군의 '명령과 복종' 결심 모델과 비교하여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윤리에 있어 도덕적 정당성을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명령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통한 수행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책임은 단순히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하라면 해!'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엄숙한 마음에 더하여 필요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명령의 시달(집행)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음은 그 명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 존엄성이 말살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이익이자 편의인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사결정 모델을 교육하고 숙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군인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마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나침반과 지도를 준비하는 것처럼 한 번도 마주쳐 보지 못한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도덕성에 대한 군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능하게 한다. 즉, 도덕적 정당성을 통과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도덕성 자체의 엄숙함, 그리고 그러한 도덕성을 수행하는 군인 개인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통과한 도덕적 명령은 수명자로 하여금 진심을 다한 명령 이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억지로 행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이 명령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고,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그 명령은 분명히 더 높은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2.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의 필요성

이 절은 군대윤리를 교육함에 있어 덕윤리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절에서의 '군대윤리 교육'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3군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처럼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우선, 군대윤리의 주요 개념이 주로 장교집단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헌팅턴이 군대윤리를 "장교단의 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불변의 기준"[125]이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군대의 다양한 계층 가운데 장교집단의 도덕성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장교집단이 가지는 명령의 범위나 파급효과가 부사관이나 병 집단보다 크며, 많은 경우 명령의 도덕적 판단을 수행해야 하는 집단이 장교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126] 사관

125) Samuel P. Huntington,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 앞의 책, pp.82-83.

126) 「사관학교 설치법 제 1조(사관학교의 설치),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이하 사관학교 관련 내용(교육목표, 학년별 지도지침, 교훈, 학칙 등)은 각 군 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별 현행 요람에서 발췌한 일반 내용이다. 단, 공군사관학교의 학년별 지도지침은 요람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각 군 사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요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육군사관학교:www.kma.ac.kr, 해군사관학교:www.navy.ac.kr, 공군사관학교:www.afa.ac.kr]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요람 2012-2013』(서울: 육군사관학교, 2011)

학교를 예비 장교 육성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된다. 다음으로, 3개의 사관학교는 군대윤리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비교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앞의 사관학교 설치법에서도 드러나듯 육・해・공 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국군을 구성하는 3군의 정규 장교를 양성하는 곳으로 상호 유사성과 함께 학교별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하기에 적절한 데 반해, 또 다른 장교 양성기관인 학군단과 사관후보생 과정은 그 집단의 수만 1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유의미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의 유사성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사관학교에서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그 시사점, 한계 등을 논의하겠다.

1)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의 필요성

덕윤리는 행위를 지도하여 줄 도덕원리 또는 규칙보다는 도덕 행위자 그 자체를 중시하는 윤리 이론으로서, 사회가 다원화・복잡화되기 이전의 소규모 공동체를 배경으로 해서 발달된 것이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도덕적 행동인지를 누구나 식별할 수 있었고 또 바람직한 행위에 관해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문제는 그러한 도덕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품성, 곧 덕이 더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세 계몽시대 이후 신의 은총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던 사회관이 과학의 발달로 무너지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에 대한 자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사회가 산업화・이질화・다원화・복잡화되면서 친숙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안정적인 소규모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의 갈등이 빈번하고도 첨예하게 나타나게 되고 사람 또는 집단마다 도덕적 이상이나 선호하는 가치, 생활 원리 등에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요람 2012-2013』(창원: 해군사관학교, 2012)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요람 2013-2014』(청원: 공군사관학교, 2013)

있어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제기되어 바람직한 도덕 생활의 모습이나 규칙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같은 시대적·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의무 또는 규칙 중심의 윤리이었던 것이다.[127]

이러한 도덕교육을 이루는 큰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 사관학교 교육의 방향은 다분히 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관학교의 의무·규칙 중심적 교육의 특징은 학교별 학칙에 제시된 교육 목표와 교훈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아래는 각 사관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훈이다.

<표-7>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육목표 및 교훈

구분	교육 목표	교훈
육사	1.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관 확립 2. 위국헌신의 군인정신과 리더십 함양 3. 첨단 군사 전문지식 습득 및 활용능력 배양 4. 창의적·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5.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연마	지(智) 인(仁) 용(勇)
해사	1. 충성심, 명예심, 희생 정신이 충만한 군인정신과 리더십 함양 2. 장교로서의 직무수행,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3. 불굴의 투지 함양을 위한 강인한 체력 연마 4.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고도의 민주시민의식 고취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공사	1. 공군 핵심가치를 내면화하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공군인 양성 2.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군사전문가 양성 3. 목표지향적 시너지를 창출하여 항공우주군을 선도할 군 지도자 양성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127) 도성달 외(2001), 앞의 책, p.87.

물론, 사관생도와 장교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변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의 고수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올바른 이성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변하지 않는 기준과 규칙의 중요성이 곧 구체적 상황의 중요성 또는 사관생도와 장교 개인의 도덕적 품성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유덕한 품성, 또는 덕윤리의 가치들이 의무 윤리를 대체하는 대안적 성격이 아닌 '의무 윤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보완책'[128]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지 나약의 문제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비록 우리가 도덕적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약한 의지 때문에 쉽게 유혹에 굴복하거나 무심한 나태로 인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실패하는 경우이다. 덕이 필요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록 우리가 아는 것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조율된 적절한 감정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도덕적 실천은 일종의 강제에 의거한 행위와도 같이 마지못해 행하는 내키지 않는 행위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는 감정의 불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조율되지 못한 부적절한 감정으로 인해 도덕적 삶의 질이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129] 따라서, 덕윤리적 특성을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은 사관생도와 장교로 하여금 규칙과 원칙, 또는 구호로만 다가왔던 군인의 도덕성과 덕목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통해 반복적으로 덕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덕이 있는 사관생도, 장교,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은 때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칙을 제정・집행하는 것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의 준수는 그 규칙을 넘어선 영역, 또는 규칙과

128) 황경식, 앞의 책, p.425.
129) 황경식, 앞의 책, p.24.

규칙이 상충하는 영역의 문제 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덕이 있는 개인의 모습에 대한 감화를 통해 표현되는 덕성은 규칙을 넘어서 스스로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도덕적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2)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의 적용 가능성

1항의 내용처럼 군대윤리에 덕윤리적 특성의 접목이 필요하다면, 과연 그것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즉,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 규범 중심적이고 규칙 중심적 집단인 사관학교와 군대 집단에 덕윤리의 특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연구자는 군대윤리에 대한 덕윤리의 적용 가능성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각 사관학교의 학칙에 제시된 기본 임무를 통한 가능성의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사관학교의 운영 규모를 통한 가능성의 확보이다. 우선, 첫 번째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사관학교의 학칙 중, 제 2조 임무의 내용을 살펴본다.

<표-8> 육・해・공군사관학교 학칙 제 2조(임무)

구분	학칙 제 2조(임무)
육사	1. 본교의 목적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 정규장교를 양성하는 데 있다. 2. 본교의 임무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군사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정예 정규장교를 양성하는 데 있다.
해사	**군인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능력을 갖춘 정예 해군장교를 양성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
공사	공군사관학교의 임무는 **올바른 품성**과 탁월한 역량을 구비하고 국가와 군에 헌신하며 장차 항공우주군을 선도할 정예 공군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다.

위의 학칙 내용 중, 육사의 1번은 ‘임무’가 아닌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육·해·공사 공히 각 사관학교 임무의 최우선순위가 ‘도덕적 품성을 지닌 군인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육사의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해사의 ‘군인으로서 필요한 품성’, 그리고 공사의 ‘올바른 품성’은 모두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군직에서 도덕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한 도덕적 품성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사관학교 임무(2조)는 앞의 1항에서 제시한 교육목표(3조)보다 선행된 학칙으로, 형식적인 목적을 제시한 1조의 내용을 제외하면 가장 우선시되는 학교의 규칙[學則]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각 사관학교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도덕적 품성을 지닌 장교를 양성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이는 사관학교 군대윤리에 덕윤리적 특성의 적용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대윤리에 덕윤리적 특성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사관학교의 운영 규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모집 사관생도 기준, 사관학교 1개 기수의 사관생도는 기백명(幾百名)[130]으로, 4개 학년으로 구성된 단일 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수는 1,000명 안팎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의 유덕한 성품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 최소 수 천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대의 사관학교 구성원은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 전체는 평시 64만여 명, 전시(예비병력) 320만여 명[131]이라는 대규모의 집단이지만 사관생도들이 실제로 유의미한 접촉을 하고, 의사소통하며, 함께 생활하는 삶의 단위는 사관학교 단위, 또는 사관학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는 유관기관 정도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생도들이 장교로 임관하여 실무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받고, 지휘할 부대의 규모 역시 사관학교의 규모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사관학교와 실무 부대에서 실제로 개인이 영향력을 미치며 생활하

130)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4년 신입생 선발 요강을 기준으로 해군사관학교의 선발 인원은 160명이며, 육사와 공사는 000명이다.
131) 국방부, 『2012 대한민국 국방백서』(국방부, 2012), p.289.

는 삶의 규모가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됨은 덕윤리적 특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성원들이 대체로 상호 인지하는 가치관과 이를 구현하는 전통과 관행을 공유하고 있기에 덕의 윤리가 행위지침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공유된 기반 위에서 구성원들은 일정한 덕이 지정하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지니고 상호 간에 예측 가능한 기대 속에서 살 수 있다.[132]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사관학교의 현실에 접목시켜 보면, 선·후배 상호간의 솔선수범과 존경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사관학교 집단과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 등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어떤 규칙이나 처벌규정, 또는 특정 행동양식을 요구하는 교훈적 문구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또한 더욱 자연스럽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덕윤리적 교육의 시사점과 한계점

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관학교에서 덕윤리를 활용한 교육은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덕윤리를 적용한 교육이 가지는 시사점과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덕윤리가 군대윤리 교육에 제공하는 첫 번째 시사점은, 군대윤리가 규칙·원리 중심의 도덕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황·맥락 중심의 도덕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휘통솔이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를 필요로 하며, 군의 교육정책도 '전일주의적 접근(holistic approach)'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함[133]을 의미하다. 즉,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사관생도나 장교의 모습에 머무르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유연

132) 황경식, 앞의 책, p.421.
133) 윤영돈, 앞의 글, p.75.

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자 친구와의 갈등, 가정의 어려움 등으로 무기력하고 학업에 소홀한 후배 생도를 보았을 때,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 대한 대가로 과실보고 지적을 하거나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함께 공감하고, 필요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선배의 모습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무 부대의 지휘관의 모습에 대입시켜 본다면, 부대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잘 적응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선배생도, 지휘관의 모습은 계급구조와 관료제적 조직의 분위기로 인해 딱딱하고 건조할 수 있는 사관학교와 실무 부대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생기있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상황·맥락 중심의 도덕성을 기르기 위한 사관학교 환경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현재 각 사관학교에서 제시하는 학년별 훈육중점(또는 생활목표)에서 고학년의 핵심 목표를 이성적·정의적 개념에 더하여 감성적·배려적 개념을 추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는 각 학교의 현행 학년별 훈육중점(생활목표)이다.

<표-9> 육·해·공군사관학교 학년별 훈육 중점(생활목표)[134]

구 분	육군사관학교 (훈육중점)	해군사관학교 (생활목표)	공군사관학교 (생활교육 목표)
1학년	군인적 가치관 확립	복종	군의 기본정신 및 국가관 확립
2학년	확고한 사명감 함양	모범	건전한 시민의식 및 개인역량 증진
3학년	합리적 리더십 배양	자율	리더로서 기본자질 습득
4학년	야전 적응 자신감 함양	지도	장교 자질 및 지휘능력 구비

134) 본 내용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내용은 각 학교별 요람에서 발췌하였고, 공군사관학교의 생활교육 목표는 요람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 공군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발췌하였다. 단,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는 학년별 생활교육 목표(교육적 측면)와 학년별 생활목표(사관생도 생활 측면)이 모두 게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교육적 측면이 강한 생활교육 목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군사관학교는 생활목표에 교육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물론 위의 내용 중, 육사의 리더십(3학년), 해사의 자율(3학년)·지도(4학년), 공사의 리더의 자질(3학년)·장교의 자질(4학년) 등의 개념 속에는 이미 상황·맥락 중심의 도덕성과 덕윤리적 특성이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리더십과 장교의 자질'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도덕성을 포괄하는 더욱 넓은 범위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품성의 핵심적 항목으로 자율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암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맥락 중심 도덕성의 단초뿐만 아니라 '배려심', '공감능력', '소통능력'과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덕목을 추가로 제시한다면 이에 따른 훈육이나 교육, 또는 사관생도 스스로의 생활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덕윤리가 강조하는 개인의 유덕한 품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즉, 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처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집중[135]함으로써 자율적인 도덕성을 확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인의 자율적 도덕성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근거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서 찾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에 실패하거나 외부의 유혹에 흔들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3군 사관학교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3금제도(禁酒, 禁煙, 禁婚)의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한 외적 제재에만 집중할 경우,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없어지거나 감시에 적발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탈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만약 사관생도 본인이 3금제도가 가지는 의미나 취지 등을 공감하여 내면화 한다면 외적 감시 등과 무관하게 일관된 도덕적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덕윤리가 개인의 유덕한 품성을 통하여 스스로 도덕성에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은 이제 곧 덕윤리가 '도덕적 자아'[136]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나는

---

135) B. Mayo, "Virtue or Duty?", C. Sommers and F. Sommers(eds.), *Vice & Virtue in Everyday Life:Introductory Readings in Ethics* (New York:Harcourt Publishers, 1989), pp.197-202 재인용.

136)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적 부분으로서 '도덕성'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일수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자아관(自我觀)의 핵심이라면, 도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함을 말한다. 이처럼 도덕적 자아를 가진 개인에게는 더 이상 도덕적 행동을 위한 외적 규제나 제재, 또는 이익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자아를 가진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합치하도록 행동하는 것일 뿐,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덕윤리를 통하여 개인의 유덕한 성품을 배양하고 이를 개인의 도덕적 자아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음은 군인으로서 외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도덕성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군대윤리에 대하여 덕윤리가 갖는 마지막 의의는 개인의 덕성 함양을 위해 도덕적 수련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은 '교수(teaching)'에 의하여 획득되는 반면에 도덕적인 덕은 '실천 및 습관(hexies)'에 의하여 획득된다고 했다. 매킨타이어(MacIntyre) 또한 지성적 덕은 '가르침(teaching)'을 통해 이루어지고, 품성적 덕은 '습관적 수행(habitual exercise)'으로 생겨난다고 보았으며, 특히 도덕적 습관의 형성을 '덕의 수련(cultivation of virtues)'이라 하였다.[137] 이를 통해 사관생도들이 스스로의 덕을 실천하고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덕을 수련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관계기관과의 멘토링 활동을 통한 덕의 베품, 또는 사관학교 생도사 내에서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한 나눔의 활동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관생도들은 도덕적 삶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를 통한 건전한 행복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

록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보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도덕적 이상 혹은 목표와 부합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며,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창우, 앞의 책, p.292. 참고

137) 정창우, 앞의 책, p.197.

는 곧 개인의 덕의 함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덕을 수련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과 함께 덕스러운 사관생도, 덕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존중하고 지향할 수 있는 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덕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푼 사관생도의 모습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거나 정기적으로 선행 우수 생도를 포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확립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부를 잘 하고 운동을 잘 하는 생도가 좋은 생도'라는 인식을 넘어 '도덕적인 생도가 좋은 생도이며 좋은 군인'이라는 도덕적 인식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군대윤리 교육에 있어서 덕윤리가 가지는 다양한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덕윤리와 규칙 중심의 윤리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벽하게 대체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프랑케나(W. K. Frankena)의 "원칙 없는 성품은 맹목적이고 성품 없는 원칙은 무력하다"[138]라는 통찰과 같이 덕윤리와 규칙 중심의 윤리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관계이다. 특히, 사관학교나 군대의 상황에 접목시켜 두 윤리 이론을 바라본다면 둘은 단순한 상호보완의 관계를 넘어 '선 규칙, 후 맥락(先 規則, 後 脈絡)'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선은 규칙이 중심이 되고, 그러한 규칙의 바탕 위에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학년별 훈육중점(생활목표)에서도 자율이나 지도, 혹은 연구자가 추가하기를 제안했던 배려심이나 공감능력이 저학년의 덕목이 아닌 고학년의 덕목이었음과도 일치한다. 다시 말해 저학년의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나 가치, 그리고 학교의 내규나 규칙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는 반면, 고학년의 경우 앞선 규칙과 원칙의 틀 위에서 배려나 관용과 같은 개인적 덕성을 베풀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고학년의 상황중심, 맥락중심의 덕성이 분별없는 만용(蠻勇)이나 특권의식이 아님은 자명하다. 진정으로 규칙 위에 보완된 맥락

138) William K. Frankena, *Ethics, 2nd ed.* (N.J.:Prentice-Hall, 1973), p.65, 재인용.

이란 자신(강자)에게는 철저한 규칙의 잣대를 요구하고 타인(약자)에게는 부드러운 관용을 보이는 모습이다. 만약 이러한 두 윤리 간의 적절한 단계나 조화 없이 무조건적인 배려나 관용, 상황에 입각한 자율적인 도덕을 강조한다면 이는 집단의 무질서와 무책임, 또는 혼란의 상태를 야기할 뿐이다. 결국 온전한 형식의 도덕성은 이 둘 사이의 적절한 단계와 조화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잘 조화된 규칙과 개인의 덕성은 곧 군인의 높은 도덕성과 연결될 것이며 군직의 핵심으로서 도덕성을 굳건히 세울 것이다.

VI. 결론

이 연구는 ‘군대윤리’라는 용어의 정합성(整合性) 검토에서 출발하였다. 즉,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군대’라는 개념과 ‘옳음에 대한 탐구, 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일컫는 ‘윤리’개념이 합쳐진 군대윤리가 ‘태생적으로 모순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마치 ‘살인범의 도덕성’이나 ‘평화의 폭력성’과 같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개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대에서 윤리가 통용되지 않는 상태로 무분별하게 무력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전시(戰時) 비전투원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즉, 군대윤리 개념이 근본적으로 모순된 개념이 아님은 군대윤리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역직관성(逆直觀性)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군대윤리 개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군대윤리 개념에 대한 정당화(正當化)의 문제가 남는다. 다시 말해 군대윤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가 사용되며, 그 이론을 사용하였을 때 어떤 의의가 있고,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대윤리’를 중심 주제로 하여, 이를 윤리학의 주요 이론인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로 정당화한 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의 이론’과 ‘군대윤리적 관점에서의 명령과 복종’이라는 논쟁점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군대윤리의 교육적 과제로 ‘의무론을 중심으로 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교육의 필요성’과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군대윤리를 구성하는 세 영역의 확인이다. 연구자는 군대윤리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정의가 군인 혹은 군대의 특정한 기능에만 집중하거나 지나치게 모호하게 설정된 한계를 지적하고, 군대윤리에 대한 포괄적 영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대윤리는 ‘군대’라는 집단 혹은 집단의 행위에 관한 윤리인 ‘①전쟁

윤리'와 집단 안의 개인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②군인의 공적 도덕성'과 '③군인의 사적 도덕성'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전쟁윤리는 군대라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배타적(排他的)으로 가지는 기능인 전쟁에 대한 윤리로, 어떤 경우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는 최소한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군인의 공적 도덕성은 군인으로서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지켜야 하는 도덕적 덕목들로, 공익추구, 청렴결백, 소명의식과 같은 공직자의 직업윤리적 요소와 충성심, 용기, 임전무퇴의 기상과 같은 군인정신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군인의 사적 도덕성은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요구되는 사회에서의 도덕성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군인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사회 시민들의 인식과도 일맥상통하며, 시민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군인의 모습을 말한다.

둘째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군대윤리의 윤리학적 이론을 확인하였다. 즉,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적 가치가 만연한 현대 사회 속에서 군대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군대윤리에 적용된 제 이론들의 적용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군대조직의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 군대는 조직의 핵심 기능인 '무력의 관리'를 위하여 도덕적 가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군인의 핵심 덕목인 자기희생을 위하여 사회의 물질적·쾌락적 가치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군대윤리에 대한 윤리학 이론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현대 군에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은 의무론을 중심으로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장점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선한 동기,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모든 인간을 보편적이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특징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인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필수적인 윤리 이론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군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도덕성은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덕윤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공리주의는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율의 제정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셋째로 군대윤리적 관점에서의 정당한 명령과 복종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명령과 복종 행위는 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행위이자 기능으로, 이는 '전쟁'이라는 군인의 특수한 임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명령과 복종 행위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옳지 않으며, 법적·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명령이 정당한 명령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군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 위에 연구자는 '군인의 책임윤리'가 더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군인의 책임윤리는 법적·도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민간인 등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행한 뒤, 작전에 책임질 수 있는 명령권자(수명자)의 자세를 말한다. 이처럼 법적·도덕적 정당성에 더하여 개인의 책임의식을 갖춘 명령과 복종은 본인과 수명자, 명령 행위의 대상자 모두를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시나 의무이행의 촉구가 아닌 '군인의 도덕성' 자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상의 군대윤리적 명령과 복종의 행위를 의사결정 모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군인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 넷째로 군대윤리 교육에 있어서 덕윤리의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논의의 대상을 대한민국 육·해·공군 사관학교로 한정하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람을 활용하였다. 검토 결과 현재 3군 사관학교의 교육은 다분히 의무·규칙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 반해, 사관학교의 학칙에 제시된 임무나 사관학교의 규모적인 측면을 통해 덕윤리 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덕윤리를 적용한 사관학교 교육의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였는데, 시사점으로는 상황·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사관생도·장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 유덕한 품성을 통해 외적 통제 없이도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도덕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관학교와 군에서 덕윤리적 교육은 기존

의 규칙·의무 중심의 윤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성격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규칙과 원칙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상황이나 개인적 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관학교의 경우 학년의 구분에 따른 훈육중점(생활목표)을 통해 덕윤리적 교육을 활용하되,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의 주요 덕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군대윤리가 포괄하는 세 영역(전쟁윤리, 군인의 공적 도덕성, 군인의 사적 도덕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즉, 각 영역에 대한 선행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그 연구들이 포함하지 못한 영역이 없는지, 그리고 세 영역의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쟁윤리의 경우 단일 항목만으로도 그와 관련된 역사, 포함하는 내용의 범위, 연구자에 따른 인식의 차이 등 연구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다방면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군대윤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실증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군인의 도덕성에 대한 계층·계급별 인식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성의 원칙, 또는 군대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증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대한민국 군대(또는 사관학교)의 도덕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아갈 교육의 방향을 잘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대윤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도 '군대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교육의 필요성'과 '덕윤리를 활용한 군대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교육적 과제로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나 수업모형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수준과 내용, 그리고 적절한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군대윤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제 연구자는 **"군인은 그 자체로 도덕성을 대표한다."**는 문장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 문장에서 '어떠한 군인'과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으며, '대표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형(또는 권유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군인의 본질이 곧 도덕성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군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핵심이 도덕성인 이상, 도덕성을 잃은 군인은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인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군인의 본질을 도덕성으로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력의 관리'라는 군인이 가지는 특징적 기능 때문이다. 즉,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무력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는 데 반하여, 자칫 자신을 통제할 수도 있는 무력을 군인에게 허용해 주었다는 것은 군인이 도덕적인 개인일 것이라는 신뢰와 함께 도덕적인 인간이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군인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하나의 선택사항이거나, 추구할 만한 것, 혹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따위가 아닌 군인을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원천적인 항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군인의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다짐이자 결심이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은 곧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라!'는 국민들의 암묵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군인의 직업은 결코 행복이나 이익 따위를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며, 마치 구도자(求道者)처럼 묵묵히 옳음을 행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직업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군인으로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군인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자체에 대한 행복과, 나의 고독함을 달래주는 국민들의 격려에 대한 행복일 뿐 그 밖의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군인의 본질을 도덕성으로 되돌리는 것에서부터 군대윤리가 시작되며 군인의 임무가 시작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공군사관학교(2013), 『공군사관학교 요람 2013-2014』, 청원: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역사철학과(2000), 『현대의 군대윤리』, 공군교재창.
국방부(1991), 『군대윤리(간부용)』, 동원문화사.
_____(2012), 『2012 대한민국 국방백서』, 국방부.
김경동 외(1997),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김구(2008),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서울: 비앤엠북스.
김대군・박균열(2006), 『현대인의 전문직업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김진만・박균열(2010), 『군대와 윤리』, 서울: 양서각.
도성달 외(2001), 『윤리학과 덕교육』,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2006), 『거시윤리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균열 외(2008), 『국가안보와 균대윤리』, 파주: 한국학술정보.
박찬구(2006),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파주: 서광사.
_____(2012),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서울: 울력.
변순용(2007), 『책임의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성태제・시기자(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육군사관학교(2011) 『육군사관학교 요람 2012-2013』, 서울: 육군사관학교.
이광보 외(2010), 『군대윤리』, 인천: 진영사.
이군희(2001),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법문사.
이민수(2013), 『전쟁과 리더』, 서울: 철학과현실사.
이용호(2001), 『전쟁과 평화의 법』,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전병재 외(1995),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서울: 사회비평사.
정창우(2006),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조승옥 외(2010), 『군대윤리』, 파주: 집문당.
조영갑(2005),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북코리아.
추정훈(2003), 『윤리의 본질과 직업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해군사관학교(2012), 『해군사관학교 요람 2012-2013』, 창원: 해군사관학교.
황경식(2012),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 서울: 아카넷.

(2) 논문

남봉균(2005), “정신전력:21세기 군인의 가치관 정립방향”,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 43권, pp.123-141.
민진(2010),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 53권 3호, pp.97-123.
박균열(2002), “한국군의 군인정신 덕목:평가와 대안”,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 55권, pp.179-208.
박인성(2006), “전쟁의 도덕성:이라크전쟁과 연관하여”,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 41권, pp.51-76.
윤영돈(2012), “군대윤리의 관점에서 본 정신전력 제고 방안”,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 55권 3호, pp.73-96.
이만종(2004), “상관명령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제 4권 2호, pp.651-672.
_____(2007), “명령위반행위의 형사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조선대 군사학연구소,「군사발전연구」, 제 1권, pp.131-145.
이종원(2008), “정당전쟁론에 대한 윤리적 탐구”,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 23권, pp.147-173.
제정관(2004), “장병 정신전력과 신세대 가치관”, 한국군사학회,「군사논단」, 제 39권, 2004, pp.77-94.

하태훈(2002),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그 형사책임”, 연세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12권 4호, pp.3-17.

2. 국외문헌

미국 국방대학원 편저, 백종천・이창훈 역(1989), 『군대의 윤리』, 서울: 탐구당.

Arrington, Rovert L.(1998), *Western Ethics*, 김성호 역(2003), 『서양 윤리학사』, 파주: 서광사.

Clausewitz, Karl von.(1834), *Vom Kriege*, 류제승 역(2002), 『전쟁론』, 서울: 책세상.

Cortright, David.(1975), *Soldiers in Revolt:The American Military Today*, N.Y.:Garden City.

Durkheim, Emile.(1992),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권기돈 역(1998), 『직업 윤리와 시민 도덕』, 서울: 새물결.

Frankena, William K.(1973), *Ethic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abriel, Richard A.(1982), *To Serve With Honor: A Treatise on Military Ethics and the Way of the Soldier*, Westport: Greenwood Press.

Gerhardt, Volker.(1999), *Immanuel Kants Entwurf "Zum ewigen Frieden",* 김종기 역(2007),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서울: 백산서당.

Gibson, James.(1986), *The Perfect War : Technowar in Vietnam,* Boston.

Hackett, John Winthrop.(1962), *The Profession of Arms*, the Times Publishing Company Limited.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1991), *Resolving an Ethical Dilemma Involving a Superior, MQS Ⅱ, Manual of common tasks, for lieutenants and captains*, Washington D.C.

Huntington, Samuel P.(1957), *The Soldier and The State: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허남성・김국헌・이춘근 공역(2011), 『군인과 국가-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_____(1979), *The Military Mind: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al*, Westview Press

Kant, Immanuel.(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2007),『윤리형이상학정초』, 서울: 아카넷.

_____(1788),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백종현 역(2003), 『실천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2003

_____(1790), *Kritik der Urteilskraft*, 김상현 역(2011), 『판단력비판』, 서울: 책세상.

_____(1796), *Zum ewigen Frieden und andere Schriften,* 이한구 역(2008), 『영구평화론』, 파주: 서광사.

Kijzer, Nico.(1978), *Military Obedience*, 조승옥・민경길 편역(1994), 『군대명령과 복종』, 서울: 법문사.

Lackey, Douglas P.(1994), *Just War Theory Larry May, Applied Ethics,* New Jersey:Prentice hall

Mayo B.(1989), *"Virtue or Duty?", C. Sommers and F. Sommers(eds.), Vice & Virtue in Everyday Life:Introductory Readings in Ethics,* New York:Harcourt Publishers

Miller, J. Joseph.(2004), "Squaring the circle: Teaching philosophical ethics in the military", Journal of Military Ethics, Vol. 3, Iss. 3, pp.199-215.

Neale, Jonathan.(1992), *A People's history of the Vietnam War*, 정병선 역(2004), 『미국의 베트남 전쟁-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서울: 책갈피.

Rachels, James.(1986),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노혜련・김기덕・박소영 공역(2009), 『도덕철학의 기초』, 서울: 나눔의집.

Sandel, Michael J.(2009), *Justice*,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Singer, Peter.(1993), *A Companion to Ethics*, 김성한 등 공역(2005), 『응용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Wakin, Malham M.(1979),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Boulder

Walzer, Michael.(2006), *Just and Unjust Wars*, 권영근・김덕현・이석구 공역(2007), 『마르스의 두 얼굴-정당한 전쟁・부당한 전쟁』, 서울: 연경문화사.

Winowska, Maria(1971). *(Le)Secret de Maximilien Kolbe*, 김동소 역(1993),『막시밀리안 콜베』,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Wolfendale, Jessica.(2009), "Professional Integrity and Disobedience in the Military", Journal fo Military Ethics, Vol. 8, Iss. 2, pp.127-140.

ABSTRACT

Research on the ethical justification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military ethics.

Lee Seung Chul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o goal of the military could be interpreted variously, miliary's own functions that differ from other organizations are 'conduct of war' or 'management of force'. Such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and ethics seem to intrinsically contradictory. It is because inside of 'war' or 'force' lie violent tendencies but theses normally contradict the ethics which mean 'duties that need to be conducted as a human'. But considering situations during war where non-military personnel are mercilessly attacked or force is used indiscriminately, but such actions can naturally be seen as wrong. In other words, the fact the concept of 'military ethics' is not a contradictory concept can be verified through the reverse immediacy for the situations where military ethics is absent. When the establishment possibility of military ethics is verified, the problem of justification for the military ethics concept remains. In other words, in order for the military ethics to be justified, there needs to be theoretical basis and there needs to be discussions on

wha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re according to that theory. Therefore, this research sets 'military ethics' as the core subject, justify with as the main subject of ethics, 'utilitarianism, deontology, virtue ethics', through this, check the points of disputes of 'the theory of military ethics fit for the modern society' and 'order and submission from the military ethics standpoint', and finally suggested 'the needs for the military ethical decision making model education centered around deontology and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military ethics using virtue ethics.

Four major findings were discovered through this research. First is the identification of three areas that make up military ethics.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at the precedented researchers on military ethics solely focused on military personnel or special functions of the military and the limitations that were set too faintly and set a comprehensive area for military ethics. Consequently, the fact that military ethics is a wide concept made up of '①war ethics' which is ethics regrading the action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②public morality of servicemen' and '③private morality of servicemen', which are targeted at the individuals inside of the organization 'servicemen'.

Secondly, the ethical theory of military ethics suited for the modern society was identified. In other words, in the modern society of 'materialism, individualism, and hedonism' the direction of the military was identified and through this, the application area of the theories applied to military ethics was identified. The result identified that the ethical virtues required for the modern military can use the advantages of utilitarianism and virtue ethics complimentarily centered around deontology.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stressed by deontology such as kind motive, setting morality as the highest value, and treating all

human universally and respectfully were identified to be required ethics theory for the moral cultivation of servicemen regardless of war or ordinary times. However, for the morality of the private sector of servicemen, virtue ethics can be used effectively since i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detailed situations, and utilitarianism could serve a great role for rules and establishment of rules for the operation of military bases.

Thirdly, the meaning of righteous orders and submission from the military ethics standpoint and based on this the military ethics decision making model was suggested. Orders and submissions are key actions and functions required for the military to function properly, and these come from the unique mission of the servicemen of 'war'. However, although orders and submissions have such significance, it was identified that unconditional submission to orders is not right and just orders are orders that passed legal · moral standards. The researcher asserted that 'ethics of responsibility' has to be added onto the standards for just orders. Ethics of responsibility here speaks to the attitude of the person giving the order (obedient person) who c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mission after conducting actions when sacrifice from civilians is required even though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of the military must prioritize legal · moral judgment. Also, by making the orders and submissions into a decision making model and suggesting it, it was suggested to make the right judgments in the moments dilemma.

Finally,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virtue ethics in military ethics education was suggested. In order to identify the specific educational meanings, the subject of discussion were set as Republic of Korea Military · Naval · Air Force Academies and used the brochure posted on the web sites of each academies. The result showed that

although the education of the 3 academies is currently concentrated on duty · rul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virtue ethics education was identified through the duties listed on the school regulations and the scales of the academies. According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academy education that applied virtue ethics were deducted and the implications, the ability to train flexible cadets · officers that could take into consideration situation · context, train them to act morally without outside regulation through their virtuous character, and the need for the construction of programs or environments that allow the growth of morality were identified. However, the education of virtue ethics at the military academies and the military were identified to be used to complement instead of replacing the preexisting ethics centered around regulation · duty.

Although limitations such as the fact this research fell short on analyzing the three areas of military ethics more deeply, its inability to conduct positive research, and that it fell short on to suggest a specific educational model exist, it could be meaningful as a basis research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military ethics. It is expected to improve by more active research and discussions regarding military ethics in the future.

Key words : military ethics, military ethics education, utilitarianism, deontology, virtue ethics, order and submission, decision making model